

2018.12.9.-15

제8회 사회교리주간 기념세미나·미사

제37회 인권주일

사회교리로 비추어 본 한국사회
“이민과 난민: 평화를 찾는 사람들”
- 극복해야 할 배타와 혐오 -

2018.12.9 (일) 14:00

가톨릭회관 1층 강당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주사목위원회

사회교리주간 기도문

사랑의 원천이신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복음의 빛으로 비추시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저희가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모든 피조물과 창조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선을 이룸으로써
이 땅에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고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
'사회교리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파견된 저희가
자신의 소명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인준)

‘사회교리로 비추어 본 한국사회’
제8회 사회교리주간(2018.12.9.-15) 기념 세미나·미사

“이민과 난민: 평화를 찾는 사람들”¹⁾
- 극복해야 할 배타와 혐오

- 일시: 2018.12.9.(일) 오후 2시-6시,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주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 주관: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주사목위원회

14:00	사회교리주간 영상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제작
14:10	시작기도	황경원 신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14:15	인사말	사회교리주간을 맞이하여 배기현 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사회 : 이광휘 신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14:20	기조강연	난민에 대한 배척과 가톨릭 교회의 환대 심유환 신부 (예수회 난민 봉사기구(Jesuit Refugee Service) 한국대표)
14:45	발제 1	우리사회의 배타와 혐오: 왜 이방인을 혐오하는가? 홍성수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15:10	휴식	
15:20	발제 2	이주, 난민에 대한 교회의 관점 남창현 신부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15:45	발제 3	이주노동자(이민자)에 대한 배척과 환대 김정연 교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6:10	발제 4	이방인 환대와 사목적 접근: 본당 사례를 중심으로 임문철 신부 (제주교구 동문성당)
16:40	질의응답	난민 당사자 사례 발표 진행 / 사회자
17:00	사회교리주간 기념미사	

1) 프란치스코 교황의 제51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이민과 난민: 평화를 찾는 사람들, 2018.1.1

■ 인사말

제8회 사회교리주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며

배기현 주교(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주사목위원회는 사회교리주간을 맞아 <“이민과 난민: 평화를 찾는 사람들” - 극복해야 할 배타와 혐오>를 주제로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살던 곳(고향)을 편안해하고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살 수 없어 도망치듯 피신한 이들이 있습니다. 난민들이 그렇습니다.

난민·이민은 정치 및 군사적 충돌, 경제적 빈곤,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전쟁과 기아를 피해, 또는 차별과 박해와 빈곤과 자연 훼손으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람을 자비심으로 끌어안자”고 호소하시면서, “난민, 이민자들에게 그들이 추구하는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대, 보호, 증진, 통합이 필요하다”고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²⁾ 교황님은 특히 각 교구, 본당, 수도회와 가정에 난민을 한 가족씩 받도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제주도에 예멘인 549명, 중국인 353명, 인도인 99명, 파키스탄인 14명, 기타 국가인 48명 등 1,063명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500여명의 예멘 난민이 이미 수용되어 들어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난민 수용 반대’ 청와대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7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피난민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범죄자 취급 등 일부 사람들의 배타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2) 2018년 세계 평화의 날 교황 담화, 이민자와 난민: 평화를 찾아 나선 사람들 / 제104차 세계 이민의 날 교황 담화, “이민자와 난민을 환영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하십시오”, 2017.8.15

전 세계 사회과학자들이 모여 창립한 비영리단체인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 결과, 2010-2014년 우리나라 성인이 다른 인종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을 느낀 비율이 34%로 다른 인종에 대한 편견이 심한 순으로 보면 전체 59개국 중 51위였습니다. 이는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우리나라 시민들이 함께 생각할 주제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선택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원래 그곳에 살던 사람이나 이방인을 모두 보살피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 모인 교회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을 너희 본토인 가운데 한 사람처럼 여겨야 한다. 그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레위기 19:34)

오늘 세미나를 통해 이방인이 우리의 문을 두드릴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이들의 어려움에 응답하고 환대하는 길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신부님, 발표를 해 주실 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목차

- 기조강연 : 난민에 대한 배척과 가톨릭 교회의 환대 / 7
심유환 신부 (예수회 난민 봉사기구(Jesuit Refugee Service) 한국대표)

- 발제1 : 우리 사회의 배타와 혐오: 왜 이방인을 혐오하는가? / 18
홍성수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 발제2 : 이주, 난민에 대한 교회의 관점 / 30
남창현 신부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 발제3 : 이주노동자(이민자)에 대한 배척과 환대 / 38
김정연 교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발제4 : 이방인 환대와 사목적 접근: 본당 사례를 중심으로 / 55
임문철 신부 (제주교구 동문성당)
사례 발표 (ALSHARABI SADDAM SAIF ABDULRAHMAN)

- 기념미사 / 62

- 부록
 - <부록1> 제37회 인권주일·제8회 사회교리주간 담화문 / 66
 - <부록2> 제51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 / 70
 - <부록3> 제104차 세계 이민의 날 담화문 / 77
 - <부록4> 제8회 '사회교리주간'을 맞이하며(주보간지 제작 배포) / 81
 - <부록5> 제126차 사회교리학교 기본과정 수강생 모집 / 85

난민에 대한 배척과 가톨릭 교회의 환대

심유환 신부

(예수회 난민 봉사기구(Jesuit Refugee Service) 한국대표)

들어가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016년 안전성과 존엄성 (In Safety and Dignity)이란 보고서에서 말한 것처럼,³⁾ 난민 문제는 세계역사에 그리 새로운 현상은 아니며 역사적으로 인류는 난민과 이주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여러 방면으로 그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해오고 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난민문제는 항상 인류가 대면해 왔었던 문제이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난민 문제에 고민하고 인류애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럽에서 보여지는 난민문제와 미국의 이주민 정책안에서 더 나아가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문제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문제를 고민하고 난민에 대한 이해와 해결책으로 문제를 접근하기보다, 근거 없는 두려움과 악의적인 루머들로 사회적으로 많은 소모적 논쟁들과 이로 인한 난민들에 관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보여지는 난민에 대한 반응 즉, 혐오, 배척 그리고 인종 차별의 현상 뿐만 아니라 점차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받아들여지는 상황들은 많은 부분 깊은 우려를 가지게 한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다른 유럽 국가에서 보여지는 사례처럼 난민과 이주민 문제는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에도 지속적으로 갈등과 도전들이 올 것이라 믿어진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난민 문제에 거의 노출이 되어있지

3) Anon, 2016. United Nations Official Document. *United Nations*. Available at: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70/59&=E

않았고, 난민문제에 대해 아무런 담론이나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 난민 문제가 우리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던 긍정적이던 여론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서야 난민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였고, 이 기회에 우리 사회와 교회도 진지하게 난민문제를 고민하고 난민의 미래에 대한 비전(Vision)을 가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응답은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인권과 국제 협약에 근거한 난민 문제 대처 또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난민에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과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인 접근들도 절실히 요청된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난민 문제를 통해 분열보다 더 성숙하게 사회 문제를 응시하고 대화하며 한층 더 성숙해 질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가톨릭 교회에서의 난민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 역사는 어떻게 보면 난민과 이민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세기 시작도 아담과 하와가 지상낙원에서 내쳐져 새로 이주한 곳에서 자손을 번성 시켰으며, 아브라함도 자기가 태어나 자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았고(창세기 12:1이하),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피난과 이민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고 번영하게 된다. 선택 받은 모세는 이집트에서 수천만의 이스라엘인들을 가나안으로 이주시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냈다. 예수님 또한 성모님과 요셉 성인과 함께 박해를 피신해 나자렛에서 이집트로 피난하며 난민생활을 하셨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나 민법에서 이방인(Stranger)들을 환영해주는 것은 의무였다. 가톨릭(Catholic)의 어원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보편(공통, 일반, 공변) 교회의 입장에서 또한 바오로 사도의 모습처럼 모든 이방인들과 난민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이지 단지 우리 민족과 우리 개인만을 생각하는 의미의 교회는 아니다. 더 나아가, 중세시대에 세속 권력도 교회나 수도원을 성스러운 상태의 피난처(Sanctuary)로 인정해줘서, 피난자(refuge)를 강제로 쫓아내거나 물리적으로 몰아내지 않았다.

가톨릭 사회 교리

난민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교리를 통해 이해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접근이다. 가톨릭 교회에서 난민에 대한 정의는 국제협약이나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의 난민에 대한 정의(definition)보다 확장적이고 열린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유엔난민기구에서 말하는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난민협약 1951, UNHCR)에 한정하고 있으나, 가톨릭 교회는 사실상 (de facto) 난민(전쟁 피해자, 잘못된 경제정책의 심각한 피해자 그리고 자연재해 피해자)과 국내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들을 난민으로 포함해, 국제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⁴⁾ 이유는 현대 사회의 분쟁과 기아, 자연재해 그리고 정치적 복잡성으로 1951년에 제정된 난민협약으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피해자들을 국제법으로 다 보호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난민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접근은 사회 교리의 근본 바탕이 되는 **인간 존엄성(Human Dignity)의 원리**와 사회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원리들로서 **공동선, 연대성, 보조성의 원리**들을 사용한다.

가톨릭 사회교리라고 함은, 교종(교황)의 회칙 등 여러 교회 문헌들을 통해 시대의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복음에 맞는 판단기준과 행동지침을 제시한다. 사회교리는 가톨릭 교회의 공식 교리서인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교회의 가르침이다. 가톨릭 신자들이 교리, 성사, 기도생활을 통해 개인적인 영

4) *Refugees: A Challenge to Solidarity*, n 4 5: John Paul II, Address in Nairobi, Kenya, 6 May, 1980, n 8; Paul VI, Octogesima Adveniens, 1971, n 17; John Paul II, Annual Address to the Diplomatic Corps, 1983, n 6.

성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웃과 친교를 나누며 봉사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공동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행동하기를 요청한다.

인간 존엄성(Human Dignity)의 원리에서 보면, 하느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모든 사람은 하느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특히 난민을 포함한 약자들도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가 된다(「간추린 사회 교리」 144-148항).

공동선(Common Good)이란, 인간의 기본권을 포함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난민을 포함해 아무도 제외되지 않은 채 더욱 쉽고 충만하게 자기완성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모든 사회생활 조건들을 총칭하는 원리이다(「사목현장」 26항). 사회의 구성원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공동선을 증진시키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고, 국가 또한 평화에 대한 노력, 건전한 사법체계, 환경보호, 음식 주거 노동과 교육 등의 인간의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 올바른 정치 제도를 만들 책임이 있다.

연대성(Solidarity)의 원리는 다시 말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개인들 간에 개인과 사회, 민족들 간에 상호 의존과 유대를 바탕으로 서로 책임을 지고 돌보아야 한다는 원리이다. 연대성의 원리는 난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됨 없이 모두가 함께 도와서 성장하고자 하는 지향을 통해 분열을 넘어 일치를 추구하며, 보편적 선익을 위해 헌신하려는 의지이다. 연대성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 난민과 같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웃에 대한 현실의 고통과 도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완성(Subsidiarity)의 원리는 다른말로 보조성 또는 도움의 원리 라고도 불리는데, 국가와 같은 상위단체는 공동체나 그 구성원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개인과 작은 단체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원리이다.

종합적으로, 가톨릭 사회교리는 국가 이익이나 국가 법의 관점보다 인간 존엄성(human dignity)의 근본적 질문을 근거로 하여 난민의 이동권과 그들이 다른(이웃)나라에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법적 문제나 영토의 주권 문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모두가 소중한 사람으로서 인권의 중요성을 세상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자국의 국민을 보호할 의무와 국가의 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것은 자명하다. 동시에 난민처럼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제로 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목숨을 걸고 국외로 탈출하는 난민들에게 타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도덕적 권리(moral claim)가 생기며, 난민을 받는 국가와 국민에게도 공동선과 연대성 더 나아가 보완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도움을 줘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것은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즉 어떤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자국민들을 오히려 탄압하고 인권침해를 했을 때, 국제사회가 그 나라의 주권을 잠시 보류하고, 적극적으로 인도주의적 개입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⁵⁾

가톨릭 교회 문헌

가톨릭 사회 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교회의 문헌들에 대해 더 알아보자. 가톨릭 교회는 사도들과 초대 교회 공동체의 노력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세계로 복음이 선포 되었다. 특히 1492년 가톨릭 신자인 콜롬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식민지 개척과 함께 선교를 위해 많은 선교사들이 파견되었고, 원주민들에게 가톨릭이 크게 전파되며, 바티칸은 해외 이민 사목에 관심을 가지고 전교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사목지침들을 제시하

5) 더 자세한 내용은 신문기사 참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2&aid=0001979314>

며 사목에 관여해왔다.

19세기에 들어서는 식민지를 삼아 해외로 떠나는 것 보다, 역으로 유럽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숫자가 많아지면서 원주민에 대한 사목을 전담 수도회에 위임하기 시작했다.

- 특정 지역의 이민자들을 위한 사제직에 관한 교령(Ethnografica Studia, 1914): 이민 사목 전담 사제들에 대해 처음 다루었고, 이주민들에게 지역 교회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교황 12세의 교황령 나자렛 피난 가정(Exsul Fmilia Nazarethana, 1952)⁶⁾: 제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세계는 심각한 난민과 이민의 문제를 대면하게 되고, 그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게 되며 그 요청에 의해 이 교황령이 나오게 된다. *포악한 군주의 횡포를 피하여 이집트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의 나자렛 성가정이 이민과 순례자나 박해나 빈곤 때문에 고향과 가족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떠나야만 하는 다양한 처지에 놓인 모든 난민의 전형이며 보호자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 교황령은 이민 사목을 거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교회 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다룬 첫 사도좌 문서이다. 특히 이민 사목 문제의 일차적 책임은 지역 교구장에게 있다고 규정하였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민의 권리와 이민자들의 존엄,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불평등을 극복할 필요성을 확인한다⁷⁾. 또한 평신도들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협력함으로써 이민자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도록 해야 하며, 교회가 난민, 이민, 선원, 항공기 승무원, 유랑민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적절한 사목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⁸⁾.

6) Pope Pius XII, Exsul Familia Nazarethana, 1952.

7) The Vatican 1965, Decree Concerning the Pastoral Office of Bishops in the Church: CHRISTUS DOMINUS, proclaimed by His Holiness, Pope Paul VI on October 28, 1965, Available at:

http://www.vatican.va/archive/hist_councils/ii_vatican_council/documents/vat-ii_decree_19651028_christus-dominus_en.html

- 교황 비오6세의 회칙,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ressio,1967)⁹⁾: 고향을 떠난 외국노동자들이 따뜻한 환영을 받아야 하며, 그들이 고향의 가난한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 월급을 아끼며 비인간적인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68번). 교종은 여기서 발전을 경제적인 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발전이 되기 위해 꼭 경제적인 것을 인간적인 것에서 분리시킬 수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의 인간이며, 그 인간들의 집단, 더 크게 인류 전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14번).
- 교황 바오로 2세: 1985년 세계 이주 사목대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에서¹⁰⁾ 난민과 이주민의 권리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 한다. 스승이자 어머니인 교회는 난민과 이주민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의 새로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년 대희년 세계 이민의 날 담화에서 여러가지 사유로 고국을 떠난 이민자들의 고통을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담화문(Messaggio)을 발표했다¹¹⁾.
- 교황 베네딕도 16세: 2009년 세계 이주사목대회 참가자들에게 이주와 개발에 대한 연결을 강조했다. 진정한 개발은 연대(Soliarity)이며, 세계화(globalization)가 진행중인 세계에서 공동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공동체적인 생활을 강조했었다. 난민과 이주민 문제도, 세계가 효과적인 개발

8) 천주교서울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사회교리문헌자료실(2016), 현대세계의교회에대한사목헌장 <기쁨과평화>, 제2차바티칸문헌(1965년12월7일), Available at:

http://www.catholicjp.or.kr/index.php?document_srl=2574&mid=lib_doc

9) Blessed Paul VI, Populorum Progression: On the Development of Peoples (March 26, 1967), Available at:

http://w2.vatican.va/content/paul-vi/en/encyclicals/documents/hf_p-vi_enc_26031967_populorum.html

10) Available at:

http://w2.vatican.va/content/john-paul-ii/fr/speeches/1985/october/documents/hf_jp-ii_spe_19851017_pastorale-emigrazione.html

11)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황요한바오로2세성하의 2000년 제86차세계 이민의날담화, Available at:

http://www.cbck.or.kr/book/book_list5.asp?p_code=k5150&seq=402258&page=18&KPOpe=&KBunryu=&key=&keyword=

(발전)을 위해서 다른 문화와 대화해야 하며 정당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 교황 프란치스코: 람페두사 섬 방문(2013), 교종은 당신의 첫 방문지로 불법이민자와 난민들의 수용소가 있는 이태리 최남단 람페두사 섬을 방문했었고,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처럼, 어떠한 성대한 방문 준비나 정부관료들의 도움을 마다하고, 단순한 사목자로 방문을 했다. 교종은 밀항이나 유류로 가려다 목숨을 잃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한 다음 이 고통에 무관심한 우리의 잘못의 용서를 구했다. 그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봉사하는 당신들은 소수이지만, 이 봉사의 행위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연대(Solidarity)의 모범**이라며 감사의 말을 남겼다. 미사 강론때¹²⁾ 자신의 안락만을 살피는 현대의 사회는 오직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하게 만들며 무관심의 세계화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는냐?,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 질문을 던지며 나에게 아무 영향이 없고, 나와 아무 상관 없는 일처럼 난민과 이주민들을 대하는 이 무관심의 세계화는 우리를 무책임한 익명의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며 세계적인 형제애로 접근하길 호소한다.

가톨릭 교회의 실질적 응답들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정신철 주교는 2018년 이민의 날을 맞아 난민에게 환대, 보호 연대의 손길을 청하며, 국민 의식개선과 인간중심 그리고 국내 이주 아동에 대한 합법적 체류를 요청하며 한국 천주교회의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었다. 특히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에서 보여준 제주 교구의 모습은 모범적이었다. 제주교구 교주장 강우일 주교는 2018년 교황주일 사목서한에서 난민 배척, 외면은 인간의 도리를 거부하는 범죄라며 포용과 자비를 촉구하셨고, 실질적으로 제주도 이주사목센터(나오미)는 임산

12) Available at: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en/homilies/2013/documents/papa-francesco_20130708_omelia-lampedusa.html

부나 자녀가 있는 난민 가정을 우선적으로 보살피고, 신자들이 숙소와 생필품 그리고 취업 알선과 교육 등을 지원하며 초기에 뛰어난 활동을 보여주었고, 지금도 계속되는 지원으로 많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¹³⁾.

교회는 전통적으로 자선을 즉 실천의 모범을 강조하고 있다. 난민문제에 대해 한국교회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실천을 제주도 예멘 난민과 관련되어 보여주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도 많은 천주교 교회 단체들이 난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에 국제 가톨릭 이민 위원회(ICMC; International Catholic Migration Commission)는 27,500명의 난민들을 미국으로 현지 가톨릭 단체와 정부 유엔과 함께 이주시켰으며, 그리스에 난민 신청한 6,000여명의 지원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특히 예수회 난민 봉사 기구(JRS; Jesuit Refugee Service)는 51개국에서 약 733,400여명의 난민들에게 (2016년 12월 기준) 긴급구호와 특히 교육에 대해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밖에도 SIMN(Scalabrini International Migration Network)과 CRS(Catholic Relief Service) 등의 단체들에서 실질적으로 난민 캠프나 난민지원을 요청한 나라에서 활발하게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교회의 리더들이 난민과 이주에 대한 옹호(advocacy)에 적극적이다. 최근에 제네바 국제 카리타스 대표단은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시리아 알레포 교구의 아우도(Bishop Audo)주교와 미얀마 양곤 대교구 보(Cardinal Bo) 추기경 그리고 엘사바르도 카리타스에서 일하는 안토니오(Antonio Baos)를 각각 초대해서, 시리아 난민 상황, 로힝야 난민사태 그리고 중미의 경제와 치안 불안으로 강제 이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증언하고 국제사회에 난민들의 인권을 위한 의식을 불어넣어 주었다. 더 나아가 케냐 주교회의

13) 제주교구의 이번 예멘 난민지원 사례는 귀중한 국내 난민 사목의 자료와 경험이 될 것이고, 차후에 평가와 분석을 통해 연구자료들을 남기는 것 또한 난민사목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

에서는 케냐 정부가 치안 문제로 소말리아 국경에 위치한 다답 난민캠프(현재 약 55만명의 난민이 피신해 있음)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대의견을 내고 난민들을 안전과 인권을 위해 케냐 정부가 더 나서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무엇보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지속적으로 난민에 대한 이슈를 세계에 던지며, 난민의 문제를 관심과 사랑으로 해결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종의 요청으로 2017년 1월1일부터 공식업무를 시작한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교황청 부서 (Dicasterium ad integram humanam progressionem fovendam)의 산하 난민과 이주 사목국(Refugee and Forced migration)에서 **난민과 이민을 위한 20가지 행동 지침**을¹⁴⁾ 발표하며, 우리가 어떻게 난민들을 도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다. 이 20가지 행동지침들은 프란치스코 교종이 다시 **환영, 보호, 증진, 통합**이라는 4가지 동사로 표현될 수 있다¹⁵⁾는 사실을 확인하며, 사목적 전통에 따라 가톨릭 교회는 4가지 동사 또는 20가지 지침에서 제안된 것들을 실현할 준비가 되어있고, 좋은 결과를 위해 각자의 책임에 따라 모두가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주와 난민을 위한 유엔 글로벌 콤팩트¹⁶⁾ 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정치인 시민단체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4개의 동사로 묘사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전세계가 난민과 이주에 관해 희망을 주고 그들을 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치며

전반부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현실 안에서 난민문제는 우리가 원하던, 원하

14) 한국주교회의, Available at:

<https://migrants-refugees.va/wp-content/uploads/2018/02/UN-Version-Korean.pdf>

15) 바티칸 방송국, 제104차 세계 이민의 날 교황 담화 전문, Available at:

[http://kr.radiovaticana.va/news/2017/08/23/_\[담화_전문\]_제104차_세계_이민의_날_교황_담화/1332331](http://kr.radiovaticana.va/news/2017/08/23/_[담화_전문]_제104차_세계_이민의_날_교황_담화/1332331)

16) 2016년 UN 정상회담(9월 29일, 뉴욕)에서 각국 정상들은 난민과 이주민을 돕고, 삶을 구하고,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그 책임을 나누기 위해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선포하였고, 이를 위해 올해 (2018년말)까지 난민과 이민자를 위한 글로벌 콤팩트 보고서를 만들기로 함.

자세한 상황은 <https://refugeesmigrants.un.org/refugees-compact>

지 않던 간에 계속적으로 논쟁이 될 것이고, 결국 더 큰 사회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많은 이들이 난민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또는 혐오에 맡기지 않고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마주하는 난민에 대한 심한 거부감과 반대를 보면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올바른 목소리와 난민 문제에 대한 옹호 활동(Advocacy)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난민들을 환대해야 한다. 우리가 적어도 가톨릭 신자로서 어떻게 가톨릭 교회가 난민에 대해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알고 있을 때, 세상에 대해 우리의 신앙 안에서 난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가톨릭 교회는 교종(교황) 프란치스코와 함께 난민에 대해 깊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며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해, 신앙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난민을 돕고 연대하며, 공동선을 이루어 내길 초대하고 있다.

■ 발제1

우리사회의 배타와 혐오-왜 이방인을 혐오하는가?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한국사회와 혐오

- 외국인노동자 혐오
 - cf) 인권위 인종차별표현 개선 권고 (2011)
- 2013년 일간베스트의 등장: 혐오/비하의 놀이화 (민주화운동세력, 호남, 여성, 외국인 등)
- 동성애혐오, 여성혐오, 이주자, 난민 혐오

일상적 의미의 ‘혐오’ (hate)

- 혐오 嫌惡 [발음 : 허모]
 - 싫어하고 미워함.
 - 예문) 추악한 세상에 대한 혐오로 가득 차다; 그는 부정과 부패에 대한 혐오가 치솟았다; 힐끔 나를 보는 그 표정엔 무슨 징그러운 동물을 보는 듯한 혐오가 있었다. (출처: 이병주, 행복어 사전); 아픔과 사랑이 사라져 가는 세상, 나는 인간에 대하여 혐오를 느낄 때가 많다. (출처 : 박경리, 원주 통신)
 - 예) 혐오식품, 혐오시설
- hate
 - to dislike someone or something very much

혐오표현의 개념: 혐오

- 혐오 hate

-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감정으로서 인종주의, 호모포비아, 제노포비아, 반유대주의, 성차별주의 등 이데올로기에 기반함.
- 혐오표현에서의 혐오는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

사회적 소수자: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자기가 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구분되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집합적 차별의 대상임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한다. … 소수자는 지배 집단에 대비한 피지배 집단을 가리키는 개념이지, 반드시 수적 소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현재교육, 2015)

차별과 소수자 (History of mistreatment or current Social Disadvantage): 소수자는 역사적으로 부적절한 처우와 관련이 있거나 현재의 사회적 불이익과 관련 있는 특성이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이다.

혐오가 확산되는 이유

- 사회문화적 배경: 막연한 편견과 거부감 (예: 민족중심주의 전통, 동화주의적 문화)
- 저성장 시대, 경제 사정의 악화와 개인의 취약성
- 선동가와 확산 매체의 등장 (cf. 인터넷)
- 이방인/소수자를 희생양으로 만들기, 책임 전가
-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 유포 (cf. 사이버 과학/전문가)
- 혐오/차별의 확산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대응 실패

지구촌의 혐오

- 네오나치의 재등장
- 유럽, 반이민정서 확대, 반EU, 극우파 약진
- IS와 반이슬람주의
- 영국 브렉시트와 반이민정서 확대
- 미국 트럼프와 혐오의 시대

혐오표현의 대상과 양태

- 혐오표현의 대상1: 소수자(집단).
 - 소수자: 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사유(성, 성적지향, 장애, 인종, 민족 등)에 의해 차별받는 집단
 - 혐오표현의 대상2: 일반청중. 소수자에 대한 차별/폭력의 선동
 - 혐오표현의 양태:
 - 1)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 표시, 모욕·조롱·위협,
 - 2) 차별·적대·폭력의 고취·선동
- * 표현 자체의 과격성은 무관하며 맥락이 중요함.

혐오의 해악

- 소수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
: 소수자 스트레스, 공포, 모욕, 자책, 자살
→ “영혼의 살인”(야스코)
- 소수자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status)”의 사실적 박탈 (Waldron)
- 인정(recognition)의 권리 침해 (Heyman)
→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 참여권 박탈

혐오의 해악

- 혐오표현 해악(차별)의 심각성/확장성
: 집단으로서의 소수자에 대한 공격
- 폭력으로서의 전이
: 혐오표현 → 기피 → 차별 → 물리적 공격
→ 절멸/제노사이드 (올포트 척도)



혐오표현의 영향(1): 심리적 영향

- 부정적 심리 반응

- ① 두려움
- ② 슬픔
- ③ 지속적인 긴장감
- ④ 자존감 손상
- ⑤ 소외감, 무력감

- 스트레스성 심리 반응

- ① 자살충동
- ②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혐오표현의 영향(2): 사회적 영향

- 소수자의 실생활에 미친 영향
 - ① 일상생활(학업, 일) 유지의 어려움
 - ② 고립과 단절
-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
 - ① 낙인·편견의 강화
 - ②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강화
 - ③ 성적대상화의 심화와 프라이버시 침해

혐오표현에 노출된 후 감정/심리 상태

감정/심리 상태	구체적 결과
부정적 심리반응	두려움, 슬픔, 지속적인 긴장감, 자존감 손상, 소외감, 무력감, 불안, 걱정, 비애, 수치심, 좌절감, 절망, 막막함, 답답함, 억울함, 분노, 실망, 혼란스러움, 억압받는 느낌, 자책
신체화된 증상	피곤, 무감각, 원형탈모증
스트레스성 심리반응	자살충동,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생활에 미친 영향(1): 일상생활(학업, 일)

소수자 유형(성별포함)	일과 학업 면에서의 영향
B 여성	미사, 직장 사직, 대학원 시험 실패
C 게이	고교 중퇴
F 트랜스젠더(MTF)	직장 사직
G 미주민, 여성	직장 사직
I 미주민	자녀가 학교 자퇴 후, (자녀와 부인의) 이민
N 장애인 여성(지체장애)	직장 사직
O 장애인 여성(발달장애)	직업훈련장 미직
P 장애인 여성(발달장애)	고교 전학
S 청소년 성소수자	고교 전학
T 남성, 이성애자 (성소수자 지지활동)	대학 휴학

혐오표현 규제 국제 기준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0조 2항: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4조: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 인종차별에 대한 고무에 근거한 모든 관념의 보급 그리고 피부나 종족의 기원이 다른 인종 또는 인간집단에 대한 폭력행위 또는 그런 행위에 대한 고무”
- <미주인권협약> 13조 5항
- 유럽인권재판소(ECtHR) 판례,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유럽인종주의 관용위원회, 베니스위원회 등의 권고/결

혐오표현 규제 해외 사례

- 유럽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벨기에, 불가리아,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체코, 덴마크,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슬로베니아

- 미주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

- 기타

뉴질랜드,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호주(일부 주), 일본

혐오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

- 범국가적 차원의 조치 없음.
- 관련 법률 전무
- 정치지도자나 사회유력인사의 무책임함.
- 시민사회나 기업 차원의 자율적 대도 미미함
- 차별행위나 증오범죄 단계에서의 강력한 대응도 없음.

→ “이름을 알만한 주요국가들 중 혐오표현에 대해 이렇게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다”

cf)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법(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혐오와 증오범죄

- 증오범죄(hate crime)
 - 장애, 인종, 종교, 성적지향, 성별, 성별정체성 등에 근거한 적대 또는 편견이 동기가 된 범죄
 - ① 폭행, 살인 등 일반 범죄 + ② 편견 동기 [bias motive]

대안: 다층적 접근의 활용

- 포괄적, 다층적 접근
 - : 형사범죄화, 차별구제, 민사구제, 형성적 조치 등의
 - 여러 규제방법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활용
- 뿌리박힌 차별관념을 바꾸기 위한 형성적 조치의 일차적 중요성(cf. 학교)
- 차별시정기구 주도의 규제

혐오표현 규제 방법

금지하는 규제	형사규제	혐사처벌	
	민사규제	손해배상	
	행정규제	차별규제, 방송심의	
형성적 규제 (지지는 규제)	국가법적 규제	교육	공무원인력교육과 시민인력교육
		홍보	국가적 차원의 홍보·캠페인, 영화·영상물 제작을 통한 인식제고 활동
		경력	공공(교육)기관에서의 반차별정책 시행
		지원	소수자(집단)에 대한 각종 지원
		연구	차별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자율적 규제	스포츠·온라인 영역에서의 자율규제, 사기업·대학에서의 자율규제, 인권·시민단체의 반차별운동	

혐오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대응

- 혐오를 코너로 몰아라!
- 정치인, 사회유력인사의 메시지 전달의 중요성
(cf. Wilders 사건, Korwin-Mikke 사건)
- 개인과 시민사회의 대항표현 (counterspeech):
일상적 실천과 대응
- 학교현장에서의 반차별/평등 교육

한국은 안전하다?

- 이방인에 대한 증오범죄나 폭력은 없으니 안심해도 좋다?
- 편견을 가진 사람이 많은 나라 (올포트): 사회구조에 이질적 요소 많음, 사회이동성 있음, 급격한 사회변화 있음, 의사소통과 지식의 전달이 막혀 있음, 소수집단 규모 증대, 경쟁과 갈등 있음, 착취로 이익을 얻음, 공격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억제되어 있지 않음, 민족중심주의 전통, 동화주의나 문화다양성이 허용되지 않음.
-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 한국 31.8%, 미국 13.7%, 호주 10.6%, 스웨덴 3.5% (여가부 조사)
-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한국 79.8%, 네덜란드 6.9%, 미국 20.4%, 싱가포르 31.6%, 대만 40.8%, 중국 52.7%, 말레이시아 58.7% (세계가치관조사)

혐오에 맞선다는 것

- 도덕적/윤리적 이유: 혐오와 차별에 고통받는 이웃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 실용적 이유: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에 직면하기 위하여
→ *무고한 이웃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라!*

사례) 난민과 (성)범죄, 고양 저유소 사건과 이주노동자

참고자료

-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머크로스, 2018)
-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규제 대안의 모색”, 『법과사회』, 50호, 2015, 287-336쪽.
-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홍성수, 국가인권위원회, 2016.
- J. Waldron,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홍성수/이소영 역 (이후, 2017).
- 한겨레21 연재기사 (홍성수의 혐오시대유감)
 - 1회: '나쁜 표현' 앞 새로운 전선, 한겨레21, 제1062호, 2015.5.19.
 - 2회: 괴담 잡기에 쓸 힘 '혐오표현' 잡기에 쓰시라!, 한겨레21, 제1066호, 2015.6.18.
 - 3회: 화끈한 혐오표현 처벌? 차별금지법부터 만들라, 한겨레21, 제1069호, 2015.7.8.
 - 4회: '문창극법'만 있으면 된다?, 한겨레21, 제1072호, 2015.7.29.
 - 5회: '혐오할 자유' 보장하는 미국? 멋모르는 소리!, 한겨레21, 제1075호 2015.08.19.
 - 6회: 어떤 혐오표현을 제한할 것인가, 한겨레21, 제1078호 2015.09.09.
 - 7회: 법은 하나의 '방법'일 뿐, 한겨레21, 제1082호 2015.10.14.

■ 발제2

이주, 난민에 대한 교회의 관점
(관련 교회문헌을 중심으로)

남창현 신부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어떤 그리스도교 공동체든, 사회적 약자들이 존엄성을 갖고 살도록 돕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려는 일에 있어서 효과적인 협력과 창의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자기들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공동체가 아무리 사회문제에 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정부를 비판하더라도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종교적 활동, 비생산적인 회의와 공허한 이야기 등으로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일종의 영적 세속성의 바다에 침몰하기 쉽습니다.”(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207항)

1.서론: 한국의 상황

한국사회는 분단이라는 다분히 타의적인 이유로 지정학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섬’으로 오랜 시간 고립되어 왔다. 이질적인 문화들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은 매우 부족했고, 정치적인 급변속에서 민족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했으며 그 안에서 ‘우리’끼리의 문화가 강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편협한 민족주의, 경제 우월주의, 그리고 인종주의는 한국사회의 세계 시민의식과 열린 민족주의의 의식형성을 가로막은 측면이 다분하다. 이러한 토양하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유입되어 왔던 이주노동자들과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쉽게 왜곡되었고 그 차별과 편견은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남아있다. 하지만 최근의 ‘난민’이슈는 이러한 편견과 차별에서 그치지 않고 혐오로 까지 악화되었다.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무지와 거부감, 정치적인 맥락과 연동되어 조장되는 혐오구호들과 가짜뉴스들, 경험부족에서 오는 정부정

책과 행정에서의 실수들, 여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등이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난민혐오의 저변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난민이슈는 그동안 우리들이 눈을 감고 보려하지 않던 불편한 진실을 수면위로 끄집어내는 도화선이 된 측면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본격적인 이슈는 아마도 시리아 난민 아이 쿠르디의 시신 사진이 언론에 노출되었을 때인 2015년 9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터키 보드룸의 한 해수욕장에서 발견된 쿠르디의 비극적인 죽음은 에게해를 건너던 작은 보트가 침몰하며 아버지를 제외한 온가족이 몰살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전 세계에 깊은 충격과 슬픔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난민이슈는 우리나라와는 먼 중동과 유럽만의 문제로 여겨졌었다. 하지만 올해 5월 경 제주도로 예멘 난민이 500명 이상 입국했다는 뉴스와 함께 청와대 게시판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접수되었고 수많은 국민들이 동조하면서 한국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교회는 이주, 난민 현상을 단순히 하나의 지나가는 현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지난 100여년의 시간 속에서 교회가 이주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 이주민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민, 난민에 대한 보편교회의 가르침

교회는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사목적, 실천적 과정 속에서 간헐적으로 표명하여 왔지만 이민에 대한 교황청의 공식적으로 공적인 선언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이다. 사람들의 이동은 인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지만 산업혁명으로 기인한 대규모 인류의 이동은 교회에게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왔다. 특별히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일부 이주민 집단들은 교회에 영적인 도움을 간절하게 호소하였고 교황청은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이어 발생한 세계대전 결과로 대규모 이

민이 다시 활발해졌고 교회는 교회내의 다양한 생각과 권고들을 하나의 문서에 집대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민 사목에 관한 첫 번째 교황령 ‘피난가정’(1952)로 발표되었다.

‘이집트로 피신하는 나자렛의 성가정은 모든 난민 가정의 원형이다. 포악한 군주의 횡포를 피하여 이집트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은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공포나 박해, 빈곤 때문에 그들의 고향, 사랑하는 부모와 친척, 가까운 벗들을 떠나 낯선 땅으로 떠나야만 하는 온갖 이민과 난민 그리고 이방인들의 전형이며 보호자이다.(서문)’

이 교황령은 수세기 동안 교회가 이주에 관하여 발표한 공식 문서들과 사목 활동들을 빠짐없이 요약하였고 이주 사목에 관한 명백한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이주의 권리’에 대해 66항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있다. ‘민족과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자기 노동으로 이바지하고 있는 타국이나 타 지역 출신 노동자들과 관련하여, 보수나 노동 조건에서 온갖 차별을 힘껏 막아야 한다.’ 또한 평신도들에게도 사회의 모든 분야에 협력하여 이민자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도록 요청하였다.

이러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은 이후에 이민에 관한 새로운 훈령 ‘이민 사목에 대한 훈령’(1969)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바오로 6세는 이 훈령을 통해 이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주 사목의 방법들을 과거의 경험과 모든 사람의 협력을 고려하여 새롭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훈령은 새로운 형태의 이민과 그것이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면서 자기 나라에서 살 권리, 이주의 권리, 모국어와 자국문화를 보존할 권리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들을 구체적으로 재확인하고, 이민을 특수사목의 대상으로 새롭게 정의한다.

가장 최근의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 훈령 ‘이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

랑'(2006)에서는 이민자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에 대해 선교학적 해석을 제안하고, 특히 다양한 문화와 종교 안에 심어져 있는 '말씀의 씨앗'을 발견하도록 촉구한다. 또한 이민현상은 교회의 본질적인 네 가지 특징을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제공한다고 이야기한다. 첫째, 교회는 인류가족 전체의 일치를 표현하기에 하나이며, 둘째 교회는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 안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에 거룩하고, 셋째, 교회는 조화를 이루어야 할 다양성에 열려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마지막으로 모든 개인과 민족들을 복음화 하는 것에 투신하기에 사도적이다.(97항)

훈령의 내용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시대의 징표이며 교회의 관심인 이민현상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교회는 '너희는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듯이 맞아들였다.'(마태 25,35)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민자들에게서 보아왔으며, 그러기에 이민을 마치 오순절에 성령의 선물로 교회의 형제가 된 여러 민족과 인종의 만남처럼 인류사회가 방대하고 다양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 성경에서 이민이 곧 구원역사였던 것처럼 현대의 이민 역시 하느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으로 이해한다. 성조들의 이주역사로부터 시작하여 성가정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이민현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고, 오순절의 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난다.(12-13항)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치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다.'(에페2,14)

2부에서는 이주 사목적 중요 가치로서 '환대'와 '유대'를 제시한다. '이민들은 자신들을 한 인간으로 따듯이 맞아 주고, 인정해 주며, 존중해주는 몸짓을 목말라 한다. 그냥 단순한 인사라도 그런 몸짓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에 대한 환대와 연대와 개방성을 가르칠 의무를 느껴야 한다.'(96항)

또한 이민자들에 대한 다양성 존중의 맥락에서 출신국의 '토착화된 전례'와 '대중신심'을 중요시 할 것을 강조하고, 타종교인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다. 특별히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국가들 안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무슬림 이민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지역 교회의 일반 가톨릭 신자와 사목 종사자들이 모두 다른 종교에 대한 충실한 교육과 정보를 통하여 편견과 종교 상대주의를 극복하여야 하며, 대화를 방해하고 장벽을 만들며 심지어는 폭력과 오해를 불러오는 부당한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 버려야 한다. 지역 교회들은 그러한 교육을 신학교와 학교, 본당 사목구의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다.’(69항)

이어지는 3부와 4부의 내용에서는 이민 출발지와 도착지 교회들과의 친교를 바탕으로 한 사목의 연대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민의 날 또는 이민주간을 기념하는 일의 중요성과 이와 관련된 이주사목 담당자들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민현상을 대처하는 자세로 단순히 개인, 사제, 수도자, 또는 평신도들의 헌신에만 맡겨서는 안되며 지역교회와 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역시 강조하고 있다.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주, 난민에 대한 관점은 그 어느 가르침보다도 적극적이며 역동적이다. ‘우리 자신의 울타리에서 나와 다른 이들과 결합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은 내재라는 쓴 독을 맛보는 것입니다.’(「복음의 기쁨」 87항) 교황에게 사회적 약자들 특별히 이민 난민들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소환장이며, 동시에 우리들을 각성케 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지평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핵심적인 동력으로 여겨진다. 교황에게 이민과 난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의 일치로 이끄는 중요한 스승이다. ‘사회적 약자들 역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들이 우리를 복음화 시키도록 해야 합니다.’(「복음의 기쁨」 198항) 이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우리를 혼란케 하는 폭력적인 근본주의와 관련된 일들과 만나더라도, 참된 이슬람교도에 대한 우리의 존중은 반드시 우리가 증오의 일반화를 피하도록 해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이슬람과 코란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복음의 기쁨」 253항) 교

황에게 사회적 약자, 특별히 구조적인 악의 결과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이민, 난민은 단순히 돌봐줘야 할 필요가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와의 일치로 이끌어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자 의무이며 더 나아가 스승이다.

3. 한국교회와 서울교구의 이민, 난민에 대한 사목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는 2008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산하에 국내이주사목위원회를 설립하면서 국내 이주사목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연 4회 국내 이주 사목 교구 대표 사제 회의, 연 2회 국내 이주 사목 실무자 연수, 세계 이민의 날 담화문, 포스터 제작, 전국 본당, 수도회, 및 각 기관에 발송, 국내 이주 사목 단체 방문 및 단체 지원금 전달, 국내 이주 사목 자료집 번역 및 발간, 등을 주요한 업무로 하고 있다. 위원회의 업무는 가 교구 사목센터와 실무자들에게 한국 천주교 이주사목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지식의 교육, 단체 간 상담연계, 정보 및 자문활동 등의 교류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대교구 이주노동자 사목은 1992년 8월 27일, 국내 노동자를 위해 설립되었던 서울대교구 명동 노동문제상담소 안에 이주노동자를 위한 상담소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주노동자 노동문제 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상담소는 한국교회 최초였을 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에서도 처음 시작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공적인 시설이었다. 고(故) 김수환 추기경도 이주노동자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상담소 개소 몇 년 후 서울 월계동 인근에 이주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열게 되었다. 이는 점차 확대되어 2014년 2월 과거 노동사목위원회의 이주담당이었던 부서를 독립시켜 이주사목위원회라는 교구 공식조직이 탄생하기에 이른다.

현재 이주사목위원회에는 베트남, 필리핀, 중남미 등 다양한 신자공동체들이 조직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주민 가톨릭 이주민 공동체들의 자국의 토착화된 형태의 신앙생활을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토양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이주노동자 상담과 결혼이민자 상담과 지원 그리고 무국적 자녀나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과 공부방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쉼터와 자립쉼터를 운영함으로써 이주민들의 초기 정착부터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는 순간까지 전반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는 기존의 산재환자 단기쉼터를 난민들을 위한 쉼터로 전환하여 난민신청자들의 단기 숙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주, 난민 문제는 각 기관의 활동 열심여부와 병행하여 올바른 제도개선을 통한 구조적인 악을 개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바, 종교를 초월한 4대 종단 이주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민간단체들과 교류하면서 정부기관의 법률개정 및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기자회견, 심포지엄 등을 통해 대사회적인 메시지 전달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최근엔 난민이슈의 중심에 있는 제주 교구를 위해 타교구와 협력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향후 예측 가능한 상황들에 대한 사목적 접근을 긴밀히 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본당의 천주교신자들의 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자료집 역시 준비 중에 있다.

4. 결론

교회의 가르침에서 이주는 인류 발전의 장애물이나 장벽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것은 하느님 구원경륜을 관통하는 인류의 본질적인 요소이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이주현상을 도외시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기회로써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교회는 오늘날 거대한 악에 대항해야 하는 상황에 있지 않다. 반대로 파편화되고 평범한 형태의 모습으로 일상에 젖어들어 있는 미시적 악에 대항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것은 면밀한 성찰이 아니면 알아채기 힘든 형태로 우리들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결정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두려움’이다. 익숙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처음부터 증오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증오는 맥락을 지니며 그 맥락의 시작은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에 대한 교회의 대안은 복음적 상상력이다. 두려움은 정당성을 찾기 위해 배타적 근거들을 편집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모여진 근거들을 바탕으로 증오와 혐오를 만들어낸다. 이 증오는 각각의 사람들의 상상력을 마비시킨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진 상상력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낸다. 문화와 문화가 대화를 시작하고, 이질적인 것이 신선한 것으로, 낯설음이 설레임으로 변화될 때 이 사회의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은 상상할 수 없는 지평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씌어놓은 수많은 편견과 혐오의 모습을 한 두려움의 딱지를 떼어내는 선봉에 있어야 한다.

“이민은 저에게 특별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경 없는 교회, 자신을 모든 이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교회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모든 나라가 지역 정체성 상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종합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날 관대한 개방을 권고합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불신을 극복하고, 서로 다른 사람을 수렴해서, 그 수렴자체를 발전의 새 요소로 만드는 그런 도시들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도시의 건축 디자인에서라도, 다른 공간들을 연결하고 결합하여 우호적으로 인정하는 공간으로 가득한 그런 도시들은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복음의 기쁨」 210항)

■ 발제3

이주노동자(이민자)에 대한 배척과 환대

김정연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들어가며

어느덧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230만 명을 넘어서 국민 전체 인구의 약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그 중에서도 다문화 가족의 수는 96만 명,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의 수는 28.3만 명에 이르러, 향후 5년 안에 체류 외국인의 규모는 300만 명(전체인구 대비 약 6%)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 지난 2007년 100만 명 돌파 이후, 1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날 만큼 한국사회의 양적인 글로벌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국제결혼은 흔해졌고, 외국인과 섞여 일하는 일터도 많아졌으며, 이제 대중교통을 비롯한 우리주변의 생활공간에서 다양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들과 일상적으로 만나고 있다. 최근에는 유창하게 한국말을 구사하는 외국인 출연자들을 TV를 비롯한 대중매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 역시 한국사회가 이미 다문화사회로 완전히 진입하였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은 정부를 비롯한 이주민단체 그리고 다수 시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어느 정도 높아졌고,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도 점차 익숙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주민 증가에 따른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¹⁷⁾, 위장 결혼·이혼, 문화 충돌, 범

17) 이주민에 대한 시선이 차가워진 이유 중 하나는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이 급격히 늘어나 내국인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법무부 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3년 157만6천34명에서 지난해 218만498명으로 4년 만에 60만4천464명(38.4%) 늘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2004년 8월)된 직후인 2005년에 74만7천명 수준이었으니까 12년 만에 약 세배나 증가한 것이다. 국내 불법체류자는 2013년 18만3천106명에서 2017년 25만1천41명으로 37.1% 늘었다(연합뉴스. 2018. 7.22)

죄 등의 사회 문제가 등장하면서 이주민에 대한 분노와 혐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모두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사실이다.

한국사회가 열심히 부르짖어왔던 ‘세계화’ 열풍으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과거보다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이는 상당부분 서구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 즉 백인에 국한되는 이야기이며,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출신의 외국인 특히 이주 노동자나 이주여성 등과 같은 이주민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여전히 이들에 대해서는 소수자, 타자, 열등한 집단이라는 고정관념이 상당하다.

실제로 이들 이주민들에게 가해지는 편견이나 고정관념, 더 나아가 사회적 차별이나 인권침해의 문제 등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강도는 이전보다 세지고 광범위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일례로 지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던 결혼이민자 출신인 이 자스민 씨에 대한 인신 공격성 논란을 비롯하여, 한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¹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고 추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밝힌 인종차별 사례를 보더라도 개인적인 문제로 한정하기에는 동일한 사례¹⁹⁾들이 매우 많다.

개인적 수준의 혐오와 차별을 넘어 이주민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또한 이전에 비해 더욱 확산되고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여성가족부가 2015년에 발표한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 결과를 보면 2012년 동일 조사

18) 인도에서 온 성공회대 교수 보노짓 후세인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이 어떻게 행해지는지 알 수 있다. 후세인씨는 2009년 한국인 조교 한씨와 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 한 승객에게 "더러운 XX!, 너 어디서 왔어, 이 냄새나는 XX야" 라는 모욕적 차별발언을 들었고, 한씨가 따져묻자 그 승객은 "조선X이 새까만 자식이랑 사귀니까 기분이 좋으나?라는 발언까지 들었다(서울신문, 2011. 7.21).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이들은 더럽고 냄새나는 열등한 존재가 되고, 인종차별의 대상이 된 것이다.

19) 나이지리아인 E씨는 모국친구와 함께 한 식당을 찾았다가 출입을 거부당했다. 식당주인은 '아프리카인은 손님으로 받지 않는다'며 그들을 쫓아냈다. 이들 사례는 모두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인종에 따른 차별로 인정되어 주의조치와 인권교육 등의 권고가 내려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종이 달라 차별받았다"며 진정된 사건은 지난 10년간 50건에 불과하지만 이 가운데 34건인 68%가 2009년과 2010년에 집중되었다. 출신국 때문에 차별받았다는 진정은 2005-2009년 사이 모두 213건이 접수되었으며, 민족 때문에 차별받았다는 진정도 10여건이나 되었다. 인권위 관계자들은 다문화갈등으로 제기된 진정은 5년사이 2배로 늘었다고 말했다(서울신문, 2011.7.27).

에 견주어 볼 때 2015년 조사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이 더욱 악화되었다.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응답은 2011년 30.2%에서 2015년 34.6%로 4.4%포인트 늘었으며, '경제적 기여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응답도 같은 기간 23.5%에서 33.1%로 9.6%포인트 증가했다. 이밖에 '범죄율이 상승했다'(2011년 35.5% → 2015년 46.7%),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2011년 38.3% → 2015년 48.6%)는 등 부정적 반응이 늘어났다(여성가족부, 2016).

이러한 우려스러운 결과는 지난 2013년 80여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 이미 드러났는데, 한국은 인종차별 수준을 7단계로 나누어 지도를 그린 결과, 한국은 인종차별 수준이 2번째로 높은 단계에 속하였다. 인종차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하는 질문에 한국은 응답자 중 36.4%가 다른 인종을 이웃으로 둘 수 없다고 대답했다. 반면 일본과 중국 등은 모두 20%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워싱턴포스트는 경제와 교육수준이 높고 민족적 갈등이 없는 한국에서 인종차별 수준이 높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 한국은 오랜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 동남 아시아권에서 온 이민자의 급증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였다(조선일보, 2013. 5.18).

그렇다면 이주민이 아닌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까? 안타깝게도 이들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 역시 피부색이 다름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지면서 이들을 접하는 교사들이나 친구, 이웃사람들로 하여금 이들이 언어문제가 있고, 그래서 당연히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존재로 접근한다거나 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아이, 위험한 아이로 여기는 불편한 시선 속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으며 일상생활 전반에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 열풍으로까지 불리며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담론이 정부와 학계,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었던 분위기와는 달리,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이들 이주민들에 대해 대놓고 차별적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 등이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소위 '반다문화'를 표방한 사이트 및 카페²⁰⁾와 지지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인터넷 공간을 비롯한 일상의 각 영역에서 확대일로에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금 현재에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와 관련된 보도 등에 대해 분노와 혐오의 댓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발현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배척과 혐오의 양상에 대한 점검과 함께, 그러한 배척과 혐오의 기저에 깔린 한국인의 인종적 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척 그리고 혐오의 양상

그동안 한국사회는 동일한 언어와 비슷한 외모를 특징으로 하는 단일민족국가로 유지해왔다. 오래전부터 다른 인종들과의 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은 외국인과 어울려 함께 살아본 경험이 거의 없는 편이어서, 외국인이란 존재는 말 그대로 이방인으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반응²¹⁾들은 한국사회가 오랜 세월 이어온 단일민족주의, 순혈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맞물린 한국 사회 일반의 뿌리 깊은 외국인 배타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차별의 양상을 단일 민족주의, 순혈주의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모든 외국인이 아닌 유독 우리보다 검은 피부를 가진 외국인에게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시기를 거치면서 서구 선진

20) '다문화정책반대',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모임' 등의 반다문화 사이트들이 있으며 회원수가 2만 명이 넘는 사이트도 있다(연합뉴스, 2011, 11.29).

문물에 대한 동경, 해방군으로서의 미군에 대한 한국인의 경험, 원조에 대한 고마움 등으로 증폭된 한국인의 '백인선망' 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은 어느덧 우리사회에 백인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환대를, 흑인을 비롯한 동남아인 등의 유색인종에 대해서는 차별과 홀대를 보이는 흑백에 대한 극단적인 '선호'를 갖게 만들었다. 여기에는 인권이나 평화, 자유 등의 보편적 가치보다 한민족의 단결을 통한 민족주의 이상화 전략의 실시로 화교를 비롯한 혼혈인 등 한국 내의 이질적인 구성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일상화했던 정치적 배경도 한 몫을 담당해왔다(하상복, 2012). 자민족중심주의에서부터 '백인선망'을 거쳐 '혼혈아 배제정책'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이념적, 정책적 결과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함께하면 더없이 좋을 사람들을 타자화시켜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 더해 오늘날 우리사회의 차별과 혐오의 양상은 외국인과의 일상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을 비롯해 개인적, 제도적, 문화적 차원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양태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스며들고 있다.

이에 국내의 연구들도 기존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가 이주민과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여성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적 차별과 태도에 관한 연구²²⁾들을 진행해오고 있다(강수돌, 2002; 노경란·방희정, 2008; 유명기, 2002; 한건수, 2003). 이들 연구들은 한목소리로 한국 사람들이 나타내는 인간적인 모욕과 무시를 비롯한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의 인종적 태도가 사회적 배제와 제도적 차별로까지 이어져 소수집단의 적응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2) 강수돌(2002)은 이주노동자를 둘러싸고 한국의 자본가, 정책, 국민들에 의한 삼중의 인종주의가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유명기(2002)는 한국 사회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적과 민족에 상관없이 '외국인노동자'라는 '문화적 인종'으로 타자화되어 일상적 차별의 담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다. 한건수(2003) 역시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에서 타자로 만들어지는 방식에 주목하였고, 노경란·방희정(2008)는 동남아 출신 외국인이나 흑인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연구를 보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주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구현되고 있는 것일까?

먼저 같은 한민족이기에 이방인이라고 할 수 없는 중국동포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차별과 혐오의 시선부터 살펴보자. 이들은 이주노동자의 신분으로 또는 이주여성의 신분으로 우리사회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함께 살고 있지만 이들 역시 부정적 이미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착한 경찰이 나쁜 놈들 때려잡는 거 보면 통과하죠. 그런데 그 나쁜 놈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나쁜지 보여 주려고 조선족 많은 동네는 더러운 무법천지로 그리고, 조선족들은 서로 괴롭히고 속이기만 하는 사람들로 다뤄도 되는 겁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 동포랑 말 한 번 해 본 적도 없으면서 뉴스나 영화만 보고 다 그런 줄 알아요. 저는 가리봉동이나 대림동에 한 번 와보라고 했어요. 한국 사회와 중국 동포 사회의 벽을 허물기 위해 엄청 노력했어요. 하지만 수백만 명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과연 그럴 마음이라도 생길까요?”

- ‘범죄도시’를 본 중국교포 차00의 인터뷰 발췌(한국일보 2017.11).

“이 동네(대림동) 조선족만 사는데 밤에 칼부림 많이 나요. 여권 없는 범죄자들도 많아서 경찰들도 잘 안 들어와요. 웬만해선 길거리 다니지 마세요.”

- ‘청년경찰’ 속 택시기사의 대사

엄청난 흥행에 성공한 이상의 두 편의 영화들은 중국동포에 대한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영화 속에 그려진 부정적인 사건과 이미지들로 인해 기존에 없었던 편견이 영화 때문에 생겼다고 할 수는 없어도, 편견을 확대 강화하였던 것은 틀림없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선족을 추방해달라’는 청원글이 부쩍 늘고 있다. 이들은 중국동포들에 대해 “우리 국민 피 빨아먹는 기생충이다”라는 표현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세계일보, 2018. 9.14).

현재 국내 거주 중인 중국교포는 80만 명을 넘고 개별 상권을 조성할 정도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이들에 대한 일상적 무시와 차별을 넘어서 혐오에 가까운 양상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해 50여개의 중국 동포 관련 단체들은 ‘청년경찰 상영금지 촉구 대림동 중국동포와 지역민 공동대책위원회 및 중국 동포, 다문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한국 영화 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를 꾸렸으며 이는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하나로 연대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내놓은 최초의 사건이었다.

중국동포는 그나마 나은 편인지도 모른다.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미개한 ‘검은 인종’에 대한 혐오와 허드렛일을 담당하는 ‘가장 하층 계급’이라는 무시가 공존한다(하상복, 2012).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국가 출신이라는 점과 전문적 기술보다는 신체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는 일들을 전담해야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 분업의 지위에서 가장 낮은 층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유로운 직업선택과 전업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채 가장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들이 이런 부당한 대우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면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다. ‘싫으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네팔 출신 우다야 라이(50) 민주노총 이주노조위원장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차별적 대우가 ‘한국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정당화된다고 설명한다. “한국 동료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위험한 일을 시키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도 않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게 하고는 기숙사비를 떼 가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부당한 대우에 항의를 하면 사업주들이 ‘돈 벌려고 와서 한국말도 못하면서 무슨 노동자 권리를 떠드느냐’고 모멸감을 주고 맙니다.” (한국일보, 2017.10.14)

이러한 위치적 상황은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었던 산업연수생 제도에서부터 제기된 문제이다. 이에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3D업종의 인력난 타개를

위해 우리가 아쉬워서 데리고 온 이들'임을 강조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동정과 연민적 태도에 힘입어 고용허가제라는 정책적 전환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장기간의 계류 끝에 이주자노동조합의 법적인 인정까지 획득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이주민에 대한 대중적 시선과 감정은 오히려 악화되어 “최저임금인상의 수혜는 외국인노동자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자국민들에게 더 많은 비용과 의무를 지우게 하는 존재”로 언급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이주민의 현실을 왜곡하고 단순화하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한국사회에 정면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혐오를 부추기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한편,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겪는 차별²³⁾도 적지 않다. 주로 동남아시아 출신의 여성 결혼 이주여성들 역시 거의 대부분 이주노동자들과 같은 나라 출신들로, 그들이 경험한 차별의 양상도 이주노동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이주노동자와는 달리 다문화 정책의 주된 포섭대상으로서 지속적인 지원과 혜택을 받으면서 법적차원에서 한국인이 될 수 있는 기회와 자기계발의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중국동포와 이주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재현방식 역시 한국사회에 잘 적응해가면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그려지기보다는 ‘온정주의적 시혜의 대상’이나 ‘수동적이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재현되면서 우리보다 못한 타자에 대한 동정으로 이들을 대하거나 우리의 너그러움으로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거나 한국인들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

23)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제도적 차별도 심각하다. 그들에 대한 다문화정책의 정책적 지원여부는 남편의 생존과 자식의 유무에 따라 좌우된다. 이러한 제도적 차별은 여성보다 한국여성과 결혼한 남성결혼이민자들에게는 더 강하게 작동한다. 공적으로 이들은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포용될 수 없다. 물론 전문직 혹은 백인남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들 남성 결혼이주민들은 한국여성과 결혼하더라도 거주권과 노동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의 이들의 역할과 정체성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으며, 한국인으로 부여된 주체성과 시민으로서의 권리 역시 현실에서는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상징적 차원의 의미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도 학교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공부는 어렵다. 아직도 한국말이 서툴다. 집에서도 입 벌릴 일이 없다. 엄마도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사람이다. 참관 수업 때 엄마가 안 오셨으면 좋겠다. 창피하다. 아이들이 놀린다. 피부색이 까맣다고." (연합뉴스, 2018. 6.17)

이상과 같이 한국에서 나고 자라 언어도 국적도 분명 한국인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조차 혼혈의 외모를 타고났다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 10년 전 결혼과 함께 한국에 정착한 베트남 출신 A(30)씨는 아이들이 엄마 나라를 비하하는 표현을 듣고는 무슨 뜻이냐고 물어올 때 가장 난감하다고 한다. '짱개', '트남이' '방구벌레' '바퀴스탄' 등 대부분 동남아 국가와 그 나라 사람들을 낮춰보는 표현이 인터넷 등에서 흔히 접하는 탓이다. 그는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국 국적을 가졌어도 '진짜' 한국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한다"고 자조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최근의 혐오 분위기는 이상의 비하와 차별의 수위를 넘어선다. 반다문화 정서를 탑재한 이들의 움직임이 날로 확산되고 활발해지면서 사실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수 많은 카페와 사이트 등에 확산시키거나 긍정적인 기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댓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한결 같이 자신들은 인종주의자가 아니며, 무분별한 다문화정책으로 정책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주민에게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의 책임을 묻고 이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그 결과,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이주민들은 그 어떤 의무도 하지 않고 한국인과 동등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미지와 함께 무임승차와 특권층이라는 또 다른 얼굴을 덧씌우면서 이주민과 다문화를 공공의적, 사회적 분노의 대상(전의령, 2015)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

각성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인의 인종적 태도 : 배척과 환대의 사이에서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발현되는 차별과 혐오의 양상의 기저에 깔린 한국인들의 인종에 대한 태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그동안 진행되어온 '다문화 논의'에서 늘 붙어 다니는 수식어인 한국인들의 '단일민족의식'과 '순혈주의'라는 말은 우리사회가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이라는 문제가 가시화될 수밖에 없는 토대였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용어이다.

이런 측면에 더해 한국사회의 인종적 태도의 양상은 '다문화주의'라는 외피적 명분에 가리워져, 서구식의 인종주의와 신자유주의적 방식의 자본주의 세계화를 담지한 결과에 따른 '국가적 위계의식'과 '경제적 계급'의 문제가 덧붙여진 모습이다.

여기에 '차이'에 대한 몰인정과 '우월의식'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인들의 인종적 태도의 양상은 한국사회의 이민자들을 가장 하위계층으로 몰아놓고 인종적·문화적 '타자화'를 단행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들도 한국사회 내 소수자 문제, 이민자들의 문제에 대한 이러한 기존 사회 구성원들의 인종에 대한 시각이 이주민과의 관계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인종과 민족에 따른 편견이 존재하고 있는데, 백인을 합리적이고 우수한 집단으로 인식하는 반면, 흑인은 열등하고 비합리적인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김상학, 2004; 임성택, 2003), 태도에 있어서도 백인들에게는 동경을, 흑인이나 동남아인에게는 멸시의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유승무·이태정, 2006; 장태한, 2001; 황정미, 2007). 특히 동남아 출신 외국인이나 흑인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보다 심각하다는 연구(노경란·방희정, 2008)와 함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유명기(2002)는 한국 사회에서는 '타인종'에 대한 인종주의뿐만 아니라 '같은 인종'에 대한 인종주의 즉 중국교포를 비롯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한국 사회 내 이주민들이 국적과 민족에 상관없이 '외국인노동자'와 '이주여성'이라는 '문화적 인종'으로 타자화되어 일상적 차별의 담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으며, 그 원인을 자본주의적 경제 서열에 따른 위계의식과 민족주의 영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측정한 연구에서도 한국인들이 다른 외국인집단보다 동남아를 비롯하여 같은 인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중국인, 심지어 중국교포들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김동수 외, 2011; 유승무·이태정, 2006; 이태정, 2009)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한국사회의 인종주의는 피부색에 따라 구분짓는 '인종주의'에 더하여 '민족주의, 자본주의적 경제서열, 계급'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이 덧입혀져 그 의미가 확장되었음을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적 상황의 인종주의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인종(race)'적 분류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러한 차원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에게서 발현되는 인종적 태도의 양상을 종합해보면 첫째, 한국 사회 내에 깊이 배어 있는 민족주의의 영향이다. 한국인은 단일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민족주의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 단일민족이란 혈통주의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성향은 혈통의 순수성이란 이름으로 더욱 강화된다. 또한 이러한 순수성은 우리와 다른 것, 즉 '타자의 것'은 배제하면서, 같은 것에 대해서는 동일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우월의식을 갖게 한다. 그 결과, 구성원들의 시선을 집단 내부에 고정시키고 외부에 대해서는 도덕적·문화적으로 열등함을 부여하거나 무시해 버리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갖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 한국인의 인종적 태도에는 인종에 따른 위계의식이 깊숙이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인종주의적 측면은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것이라기 보다는 근대화 과정에서 유입된 서구중심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서구중심주의는 한국인이 가진 위계적 인종서열 질서의 보편적이고 중심적인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인들은 서구 백인의 문화 속에서는 세련과 문명을 연상하며, 그들에게서 연상되는 세련성과 문명의 이미지는 한국인들에게 선망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경향은 해방이후 정부의 친미·친서구 정책과 엄청난 규모의 해외원조를 받은 우리의 경험이 그들을 돕는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확산시킨 데다가, 1960년대 경제개발을 통해 '서구화는 근대화'라는 도식의 전개와 함께 서구문화 전반에 관한 동경을 불러일으키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이러한 서구중심주의는 대중매체와도 깊이 결합하여 서구중심적인 아름다움을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고정시켜, 그것을 한국인들에 유포하고 강요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중매체는 그 자체로도 서구 중심적 담론의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박경태, 2008). 이러한 대중매체의 영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서구 중심화 된 사고와 가치관을 마치 표준화의 기준인 것처럼 주입하면서 사회화시켰고 이러한 결과로 한국인들은 '서구적'인 것은 우월하고 '비서구적'인 것은 열등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한국사회에서 인종적 위계에 대한 설명은 그리 단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신체적 특성과는 무관한 다른 요소들이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러시아출신의 남성노동자와 러시아 여성 댄서에 대해 그들이 비록 백인이라 할지라도 높은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는 인종적 위계에 더하여 출신국 또는 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회계층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자본주의 영향에 의한 경제적 지위 및 계급에 따른 인종적 태도의 양상이다. 한국사회에는 저숙련 생산직이라는 낮은 사회적 위계에 근거한 차별

이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이러한 직업적 위계의식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노동계급, 즉 한국노동자들 보다는 '하층계급'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천대 분위기로 확산되었으며, 차별과 배제로 이어졌다. 이러한 직업적 위계의식에 의한 인종주의는 사실 다른 선진국에서 그러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담론으로 사용된 것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위계의식은 이들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인 차별을 고착시키는 결과²⁴⁾를 가져왔다. 또한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층계급인 이유는 단지 이들의 직업이 '3D'업종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불법체류자의 신분인 이주노동자의 경우 강제 추방을 피해 다녀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으로 인해 잃어버린 이들의 사회·정치적 권리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한국에서 발현되는 인종주의의 양상은 민족주의, 서구중심주의, 신자유주의적 방식의 자본주의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같은 인종·민족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 이주민들을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의 '문화적 인종'으로 타자화시켜 일상적인 차별을 비롯한 제도적 차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나가며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의 순조로운 진입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세우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주체성이 존중될 것처럼 말하곤 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이주민의 성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 다문화 정책과 법령 등을 국가가 주도해 실시해 오으로써 이주민들을 제도적으로 분리시키고 차별을 고착화 시키는 데 앞장 서 왔다.

24) 예를 들어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은 이주노동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완전히 봉쇄한다. 또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8)은 '재한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정의하면서 법의 적용 대상을 합법 외국인에게 국한하였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되지 않음으로서, 이들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이주민 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의 주요 대상도 이주노동자들은 제외한 결혼이민자 가정이 중심이다.

이제 한국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이전보다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다양성을 받아들일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국가의 정책적 지원의 노력도 전제되어야 하고 정부와 시민단체사이의 성공적인 역할 배분을 비롯해 공조체제의 확립 등의 거시 차원에서의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수구성원들이 나서서 소수자들의 권리확보를 위한 집단적 노력 등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공존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 유연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문화적 감수성과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적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제안을 하는 바이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 우리사회의 정책과 법령 등에 담긴 제도적 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사실 우리사회 소수 구성원에 의해서 자행되는 이른바 강패적 차별보다는 다수 구성원에 의한 일상적 차별의 강도는 훨씬 더 강력하다. 다수구성원에 의해 자행되는 제도적 차별에는 죄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수구성원들이 우리사회에서 공고히 유지되고 있는 제도적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언론과 미디어에 비춰지는 이주민에 대한 문제 중심적 보도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특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혐오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내국인과 이주민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 갈등과 충돌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산된 담론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종의 ‘사회적 상상력’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이다(한건수, 2012).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외국인 이주민들과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소통하거나 지속적인 교류를 경험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때문에 특정한 모습 혹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재현되고 확대·재생산되는 이주민의 이미지는 한국인들의 인식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일

부 대중매체의 프로그램들에서는 이주민들을 불쌍하고 무엇을 잘 못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범주화하여 동정심을 유발하게 만들거나, 문화적 다양성 이슈를 호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들의 '낯섦'을 이용하여 오락거리로 활용하거나, 이들에게 한국문화를 주입하려는 시도를 보여주는 상황들이 여전히 관찰되고 있다. 반면 같은 외국인이어도 유럽이나 북미의 경제적 선진국에 해당하는 국가의 출신 경우나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선망과 호의를 갖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언론과 미디어가 앞장서서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이들 이주민들을 '나'와 다른 '너희'로 구분 짓게 만들어 편견과 혐오를 부추기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 자신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자기성찰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다문화 사회 속 시민으로서의 자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사회의 다양성이 확산되는 속도만큼의 성숙된 다문화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이러한 시민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 다뤄야 할 역량의 범위는 상당히 넓을 것이다. 단순히 이주민들을 향한 동정과 배제의 시선을 거두는 것 이외에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할 시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것이 다문화'라는 사고방식의 전환과 함께 우리사회에서 자행되는 여러 형태의 혐오와 차별의 양상들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수돌, 2002, 한국의 이주노동자 : 이웃인가, 이방인인가. 민족발전연구, 7, 93-109.
- 김동수외, 2011, 외국인에 대한 한국 대학생의 인식: 6개 외국인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와 성격, 25(1), 1-23
- 김상학, 2004, 소수자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7, 169-206.
- 노경란·방희정, 2009, 한국 대학생과 외국인대학생 간에 사회집단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의 차이 :인종범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박경태, 2008,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책세상
- , 2009. 인종주의. 책세상
- 유명기, 2002, 외국인노동자, 아직 미완성인 우리의 미래, 당대비평 18, 12-35
- 유승무·이태정, 2006, 한국인의 사회적 인정척도와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태도. 한국사회역사학회, 275-311
- 인태정, 2009, 다문화사회 지향을 위한 인종의 사회적거리감과 문화적 다양성 태도 연구. 국제지역연구, 13(2),339-369
- 임성택, 2003, 세계시민교육관점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한국학생들의 고정관념 분석. 교육학연구, 41(3), 275-301.
- 장태한, 2001, 한국대학생의 인종, 민족 선호도에 관하여. 당대비평, 14, 99-113
- 전의령, 2015, 선량한 이주민 불량한 이주민: 한국의 주류이주다문화담론과 반다문화담론, 경제와 사회, 106, 238-270
- 하상복, 2012, 황색피부, 백색가면 : 한국의 내면화된 인종주의의 역사적 고찰과 다문화주의. 인문과학연구, 33, 526-556
- 한건수, 2003, 타자만들기 :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재현, 비교문화연구, 9(2), 157-193
- , 2012,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혐오증과 실패론 : 어떤 다문화주의인

가? 다문화와 인간, 1(1), 113-143

황정미, 2007, 한국사회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 2018 체류외국인 통계연보

여성가족부, 2016, 2015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보고서, 여성가족부

서울신문, 2011, 7.21 일자 보도기사자료

서울신문, 2011, 7.27 일자 보도기사자료

세계일보 2018. 9.14 일자 보도기사 자료

한국일보, 2017.10.14. 일자 보도기사 자료

연합뉴스, 2011. 11.29 일자 보도기사 자료

연합뉴스 2018. 7.22 일자 보도기사 자료

연합뉴스, 2018. 6.17 일자 보도기사자료

조선일보, 2013. 5.1 일자 보도기사자료

■ 발제4

이방인 환대와 사목적 접근: 본당 사례를 중심으로

임문철 신부 (제주교구 동문성당)

알란 쿠르디(Alan Kurdi)



2015년 9월 2일(수)
쿠르드계 시리아난민



그들도 우리도 놀랐다!

- ▶ 제주도 난민신청 추세 (2015년6월19일 자료)
 - ▶ 예멘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도 올해 들어 많이 증가
 - ▶ 예멘은 2017년 12월 중순 신규항공 취항과 함께 시작
 - ▶ 중국과 인도는 현재도 들어오고 있음 (예멘은 입국불가)
- ▶ 4월30일 출도제한 조치로 혼란에 빠진 제주도
 - ▶ 단지 2~3주 거쳐 가려던 제주도에 발이 묶여 난감해진 난민신청자들
 - ▶ 갑자기 난민신청들과 함께 살아가게 된 제주도민들
 - ▶ 평화의 섬 제주가 감성적인 여론에 휩싸여 대한민국 갈등의 근원지가 되었다.

(현재 제주출발 외국민 224만명 중 25%가 이슬람이고, 2015년부터 시리아난민 1200명이
우리와 함께 살아왔다는 Fact는 있고, 이슬람 500명 임박에 온나라가 시끄러웠다.)

난민을 위한 법은 있으나, 행정은 없었다!

- ▶ 제주도청에는 난민관련 담당이 없었다.
 - ▶ 난민관련 업무는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제주도청
 - ▶ 제주도 무사증제도로 인한 사태이니 제주도청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무부
 - ▶ 청와대 난민법 폐지 청원(70만명), 제주 무사증 제도 폐지 청원
 - 난민심사강화, 무사증 불허국 확대

모르니까 불안하다

(이슬람 포비아)

- ☞ 장전리 난민캠프 사건
- ☞ 시민단체들의 딜레마
- ☞ 동광성당 퇴거 소동
- ☞ 동문성당 주일학교 자모들

코란에서 가르치는 이슬람의 13 교리

- | | |
|---|---|
| 1. 사순기 시작 안한 여자아이를 강간, 결혼, 그리고 이혼해도 된다 - 코란 65:4 | 7.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 코란 9:111 |
| 2. 다른 사람을 심 노예와 노동 노예로 만들어도 된다 - 코란 4:3, 4:24, 5:89, 33:50, 58:3, 70:30 | 8. 이슬람교를 떠나는 사람은 죽여라 - 코란 2:217, 4:89 |
| 3. 노예와 아내는 배려도 된다 - 코란 4:34 | 9.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목을 베어 죽여라 - 코란 8:12, 47:4 |
| 4. 강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4명의 이슬람교 남성이 필요 하다 - 코란 24:4 | 10. 알리신을 위해 죽이고 순교 하라 - 코란 9:5 |
| 5.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로 안 바꾸면 그들을 죽이든지 세금을 내게 한다 - 코란 9:29 | 11.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을 위협 하라 - 코란 8:12, 8:60 |
| 6.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신자가에 못 밝아 죽이든지 손과 발을 절단시켜라 - 코란 8:12, 47:4 | 12.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의 것들을 훔쳐라 - 코란 8 |
| | 13. 이슬람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라 - 코란 3:26, 35:4, 9:3, 16:106, 40:28 |

TVNext.org

타종교 지원 활동

- ▶ 교리가 다른 만큼 지원방법도 달랐다.
- ▶ 무슬림을 도울 수 없다고 지원활동을 거부했던 개신교.
- ▶ 7월18일 세미나 후 "지금미 선교할 때" 라고 외치며 난민수용 시작
 - ▶ 교황볼프 2-3인 설기기 → 이슬람 기도방식 금지 조건으로 관음종 변경
 - ▶ 원선마을 임대하여 100인 설기기 → 마을 주민들의 반발로 10여명에 그치고 10월30일 폐쇄
- ▶ 불교단체에서는 숙소 한 곳 운영. 한국이슬람부산지부는 숙소 2곳 2개월 지원

가톨릭의 구호활동 (교황님의 호소)

“난민들의 희망을 꺼뜨리지 말자” 2018. 1.1 세계평화의 날 담화문



2013년 7월 8일 람페두사 방문

모든 사람의 권리인 평화를 위해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목숨을 건 길고 위험한 여정을 감내해야 한다"면서 "부디 그들의 마음속 희망을 꺼뜨리지 말고, 평화를 향한 그들의 바람을 짓누르지 말자

시민 단체, 교육 기관, 교회 등 모두는 난민과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평화로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2월 초 방글라데시 난민수용소에 있는 로힝야족을 방문하는 등 난민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가톨릭의 구호활동 (8월-10월 활동 기준)



가톨릭의 구호활동 (8월-10월 활동 기준)

▶ 숙소 제공(인원)

- ▶ 직접관리: 동문성당(4), 베네딕도수도원(13), 무릉공소(9), 가나안공소(8), 중앙로(5), 법원 뒤 집(13), 동광로(10), 성원5차(11) 등 총73명
- ▶ 협력관리: 한국이슬람(13), 한국이슬람2(10), 칠성통(22), 법무부(2), 법무부2(7), 성산포(13), 범도위(10), 불교(10), 외국인(4) 등 총91명

▶ 물품 제공

- ▶ 물품창고 운영 중 (침구세트, 주방용구, 육식용품, 주부식재료 등)
- ▶ 옷 보급소 운영 중 (유니클로 여름 옷 4,500점 / 중고 겨울 옷 4,000점 / 점퍼와 바지 430점)
- ▶ 숙소 위치 및 구성원에 따라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선풍기, 인터넷 지원

▶ 의료지원

- ▶ 매주 일요일 오후3시 무료진료소(라파엘클리닉) 운영 (내과 및 치과)
- ▶ 6월초부터 현재까지 2,3차 진료 300 여명에게 제공

범도민위원회와 네트워킹 활동

- ▶ 한글교실(인원)
 - ▶ 칠성통(20), 모슬포성당(13), 조천성당(7), 가나안공소(8), 글로벌미너피스(10), 올레호텔(30), 중문성당(9), 범도위(10), 나오미센터(11)
 - ▶ 2가정 10명의 자녀 대상, 유치원부터 중학생까지, 전교조에서 특별학교 운영 중
- ▶ 일자리 창출
 - ▶ 예멘인 특징: 8시간/일 중노동에 익숙한 사람이 매우 적음
 - ▶ 허용된 일자리: 재능/경험 상관없이 농업, 어업, 목축업, 요식업만 취업가능
 - ▶ 목표: 농업현장에서 가능한 반일제 일자리 창출하고, 최저임금 미달분을 범도위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농민과 난민에게 도움
- ▶ 법률지원 및 행정절차지원 (전문 변호사 9명 확보)
 - ▶ 인도적체류 불허자 34명 모두 이의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하여 검토 중
 - ▶ 인도적체류 허가자 중 20여명 난민지위 획득을 위한 이의신청 검토 중

나오미센터의 난민을 위한 활동계획

- ▶ 제주도 무사증제도 유지로 지속적인 난민신청자 유입 예상
 - ▶ 무사증 불허국가에 예멘(6월1일)과 12개 국가(8월1일)가 추가되어 총 24개국에 되었음
 - ▶ 그러나 중국과 인도는 포함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 유입되고 있음
- ▶ 난민신청자 지원활동의 기본원칙
 - ▶ 난민법 상 입국 후 6개월간 노동을 불허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숙식 지원이 필요함
 - ▶ 하지만 6개월 지원은 재정적인 부담이 크므로 3개월 지원 예정
 - ▶ 입국 후 3개월이 지난 난민신청자에 한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한국어교육을 제공할 예정
- ▶ 인도적체류허가 취득자를 위한 지원활동
 - ▶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취업알선
 - ▶ 기숙사가 없는 직장에 취업한 경우 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끝.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 교황주일 사목서한(2018년 7월 1일)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배척과 외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더욱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황대사 슈에레브
예멘 난민방문, 1만 유로 성금
2018년 7월 28일

“교종은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더
너그럽게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그들을 환대하자고 촉구한다.
교종께서도 예멘 난민들을 환대하기
위해 모범적으로 노력하는 제주교구와
함께 하신다”



제주교구 한 시골공소에서 예멘난민들이 묵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55294.html>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주도 예멘 난민들 위로

2018년 8월 17일

“ '우리들은 예멘
난민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는 제주교구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마음에서 제주를
방문하였다' 며 '이번
방문이 많은 단체에서
난민들을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싶다' 고 말했다.”



손병선(아우구스티노) 회장, 서울대교구 가톨릭여성연합회 박현선(일리사벳) 회장, 한국평협 박영(토마스 아퀴나스) 사무총장은 제주교구청을 방문해 부교구장 문창우 주교에게 한국평협과 여성연합회가 각각 마련한 금일봉을 전달했다.

*출처 : 천주교제주교구 홈페이지

■ 난민 당사자 사례 발표

■ 기념미사

제8회 사회교리주간 기념 미사

12월 9일(일) 대림 제2주일(인권주일, 사회교리주간)

입당성가 : 39번 하나 되게 하소서

- 1) 성부여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리 위해 몸 바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심과 같이 나도 사도들을 세상에 파견하옵니다
- 2) 성부여 내게 맡기신 이 사람을 지키시고 나 당신과 하나이듯 이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생명의 말씀이옵니다.

제1독서 : ㉔ 바룩서의 말씀입니다. 5,1-9

예루살렘아,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 버리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입어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의 겹옷을 걸치고 영원하신 분의 영광스러운 관을 네 머리에 쓰라.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어디서나 너의 광채를 드러내 주시고 ‘의로운 평화, 거룩한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너를 부르실 것이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동쪽으로 눈을 돌려 보아라.

네 자녀들이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까지 사방에서 모여드는 것을 보아라.

그들은 원수들에게 끌려 너에게서 맨발로 떠나갔지만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왕좌처럼 영광스럽게 들어 올려 너에게 데려오신다.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당신 영광 안에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높은 산과 오래된 언덕은 모두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셨다.

하느님의 명령으로 숲들도 온갖 향기로운 나무도 이스라엘에게 그늘을 드리우리라.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에게서 나오는 자비와 의로움으로 당신 영광의 빛 속에서

이스라엘을 즐거이 이끌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426번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후렴 :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우리는 몹시 기뻐노라 우리는 몹시 기뻐노라

- 1) 주님의 백성들이 저기 올라가도다 이스라엘 법을 따라 주님을 찬양하러
- 2) 예루살렘 위하여 평화를 빌어주라 주님의 성 그안에 평화가 있기를
- 3) 형제와 벗을 위해 우리는 말하노라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기를

제2독서 : Ⅳ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1,4-6.8-11

형제 여러분, 나는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애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알렐루야.

복음 :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6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십오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래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래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르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보편 지향 기도

봉헌 성가: 472번 주님 저 하늘 펼치시고

1) 온갖 두려움과 모든 근심 저 멀리에 던져버리으며,
주님 아름다움 생각할 때 내 마음엔 큰 기쁨이 넘치네.
주님은 저 하늘 펼치시고 태양과 바다 꽃 만드셨네.

그러나 주님의 가장 귀한 선물은 생명과 사랑의 은혜

2) 모든 슬픔과 모든 괴로움 내 주님께 모두 맡기오면,
주님 사랑으로 온 세상은 더 아름답고 참 평안하여라
어느날 당신이 부르시면 나는 머나먼 길 떠나가리.

높은 산 계곡에 사랑의 내 주님을 소리 높이 찬미하리 아~

영성체송 :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 보아라.

영성체 성가 : 174번 사랑의 신비

- 1) 사랑의 신비여 천사가 찬미하며 하늘과 땅이 다 함께 영원히 찬미하도다
- 2) 주님의 광채가 눈먼 인간을 비추며 주님을 느끼나이다 힘이 된 음식이로다
- 3) 생명의 음식이며 천사의 양식이라 풍성한 주의 은총 무엇에 비기리오

후렴 : 복되어라 주님의 잔치 생명의 빵을 주시나니 은혜로운 당신의 사랑 신비스런 복된 성사여

파견 성가: 91번 구세주 빨리 오사

후렴 :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두움을 없이하며 동정 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 1) 원조들이 범죄한 후 성조에게 허락하신 메시아를 보내소서 어지러운 세상에 방황하는 우리들의 간구함을 들으사 보내주옵소서
- 2) 우리 죄를 잊으시고 참회하는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유혹 항상 우리 괴롭히니 이 어려움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 3) 고통 중에 만민들은 메시아를 고대하여 애타게 기다리오니 오소서 메시아여 이 인류를 돌보소서 구세주 언제 오나 언제나 오시나

<부록>

■ 부록1

제37회 인권 주일, 제8회 사회교리주간 담화문

형제자매 여러분, 한국 천주교회는 해마다 대림 2주일을 인권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강생과 함께 도래한 ‘종말의 시간’을 살며 깨어 지내던 초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되새기며 인권 현실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 보는 일은, 다가온 성탄을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지금 우리는 인권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찰하고 발언하기에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를 막론하고 여러 추문으로 하느님 백성이 겪는 고통과 곤혹스러움이 깊고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세상을 향해 인권을 이야기하면 자칫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루카 4,23)라는 비아냥을 듣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자기도 상처입고 고통받는 이가 더 깊고 근원적으로 치유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처입은 치유자”란 헨리 나웬 신부님의 표현이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의 오랜 사회 교리 전통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모범을 따라, 올해 인권 주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권 현실에 관해 신앙의 지성으로 성찰하고 정직하게 발언하며 구체적인 실천을 도모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비정규직이나 청년 노동자, 노인, 아동, 국가 폭력 피해자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도 차별과 폭력이 만연한 인권 사각지대가 널려 있습니다만, 작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는 겹겹의 차별을 받고 있는 농어촌 이주 노동자에게 최우선의 관심과 주의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 그리고 국내이주사목위원회를 통한 1년의 조사 연구 끝에 올해 ‘농어촌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 안내문'을 만들어 각 교구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권 주일에는, 주로 놓여준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이 짧은 성찰과 권고, 이른바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올해 심각하게 불거진 여성 인권 문제를 비롯한 여러 인권 영역을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근원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두루 아우를 수 있었으면 합니다.

2. 인권 감수성의 토대는 타자의 '다름'이 초래하는 불편함을 감당하고 소화하는 능력, 곧 상대의 다름을 가능한 한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인간 존엄성」이 서두에서 “진리는 (진리 자체의 힘으로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강요하지 않는다.”(1항 참조)고 말한 것은 정녕 인권 감수성의 귀감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동성애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가 선한 의지로 하느님을 찾는 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하시거나, 몇 년 전 방한하셨을 때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하시면서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역시 복음적 인권 감수성의 빛나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3. 일상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하고 차별을 겪는 이들은 대부분 여러 부류의 소수자입니다. 이들의 고통은, 차별과 배제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이를 당연시하는 다수자와 기득권층의 무신경한 태도로 더욱 증폭됩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 역시 주변의 주류(로마) 문화에 동화(同化)된 나머지 특정 사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태동기의 교회야말로 실로 몰이해와 차별을 겪던 소수자의 전형이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첫 몇 세기 동안 그리스도교는 당대 그리스 로마 문화가 감당하고 참아 주지 못하는 '다름'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 자신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기에, 그리스도인 역시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분의 치욕을 함께 짊어”(히브 13,12-13)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초세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늘 '이방인이요 나그네'(1베드

2.11 참조)로 생각한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귀결이었습니다.

4. 이방인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관심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차고 넘칩니다. 예컨대,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레위 19,18 참조)는 구절은 단 한 군데뿐이지만, “이방인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적어도 36 군데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꼭 따라붙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도 역시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탈출 23,9; 레위 19,33-34 등 참조). 유다인들은 국외자, 타국인, 이방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으로 겪어 배워야 했고, 결코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과월절 축제에서 이집트를 탈출하던 그 밤의 상황을 재현하며 기억했던 것입니다.

5. “하느님의 가난한 이(아나뎀)”야말로 복음을 가장 먼저, 그리고 깊이 이해하는 이였음은 고대 교부들뿐 아니라 현대 사도좌의 가르침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컨대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의 기쁨」은 “가난한 이들은 복음의 가장 뛰어난 수용자들이다.”라고 하신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말씀을 비중 있게 인용합니다(48항).

어두운 밤에만 별이 영롱히 보이는 것처럼, 낮고 가난한 자리에서만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접수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비로소 고통받고 차별받는 다른 이의 처지도 눈에 들어옵니다.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 심정 헤아리듯, 교회도 자기의 이 출발점을 잊지 않을 때 세상에서 쉽게 몰이해와 차별과 박해의 대상이 되곤 하는 소수자와 ‘경계인’에게서 ‘남’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고 공명(共鳴)하며 환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이 ‘첫 자리’의 기억을 새로이 하며, 가난한 이를 돕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지를 함께 나누는 ‘가난한 교회’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말씀과 세상의 고통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알아듣고 이해하는 복음적 명오(明悟)가 열립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만 교회는 끊임없이 쇄신되고 복음화되며, 그리하여 비로소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변방으로 나가자.”고 끊임없이 초대하는 것도 바로 이 맥락입니다.

6. 이 모든 사실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권 감각은 “고귀한 것이긴 하나 신앙과는 별개의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인권 감각은 신앙과 지극히 내밀하게 연동(連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약자와 소수자를 착취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사람의 인간성과 인권을 해치는 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로 신성(神性)과 신권(神權)에 대한 공격이 됩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 나아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사람을 사랑하신 나머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대로, “교회에게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택은 문화, 사회, 정치 또는 철학의 범주 이전에 신학의 범주”입니다(「복음의 기쁨」, 198항). 다시 말해 소수자요 경계인이라 차별받는 형제자매들을 향한 교회의 우선 선택과 연대는 그저 인간애(人間愛) 차원에서 실천하는 ‘자선(또는 선행)’이기 이전에 신앙 행위 그 자체입니다. 고통받는 가난한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현존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느님 백성의 오랜 신앙 감각이었습니다.

7.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에는 이미 많은 이주민이 선주민인 우리와 공생(共生)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농어촌 지역의 노동자처럼 열악한 조건 아래 하루하루 고단한 생존을 이어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비록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신앙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들 역시 한 하느님에게서 난 우리 형제자매들임을 잊지 말아야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름’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는 차별과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올해도 베들레헴의 누추한 여관 짐승 밥통같이 가장 낮은 곳을 골라 강생하시는 구세주께 은총을 청합니다.

2018년 12월 9일 대림 제2주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 부록2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51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2018년 1월 1일)

이민과 난민: 평화를 찾는 사람들

1. 평화를 빕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평화를 빕니다! 성탄 성야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선포한 평화²⁵⁾는 모든 이, 각 개인과 모든 민족, 특히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간절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2,250만 명의 난민을 포함한 2억 5천만 명 이상의 전 세계 이주민들에 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전임 교황이신 베네딕토 16세께서는 그들을 “평화롭게 살 곳을 찾고 있는 남녀노소”²⁶⁾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곳을 찾으려고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걸고 멀고도 험난한 여행길에 오릅니다. 그들은 역경과 고난을 견뎌야 하며,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설치해 놓은 울타리와 장벽에 직면합니다.

전쟁과 기아를 피하여, 또는 차별과 박해와 빈곤과 자연 훼손으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람을 자비심으로 끌어안읍시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하여 마음을 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다시 한번 안전한 집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려면, 먼저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데에는 구체적 헌신, 협력 네트워크와 선의, 깨어 있는

25) 루카 2,14 참조.

26) 삼중기도 때 한 연설, 2012.1.15.

자세와 연민 어린 마음이 있어야 하며, 언제나 제한적인 자원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때때로 현실의 수많은 문제들에 덧붙여지는 새롭고 복잡한 상황들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도자들은 예지의 덕으로써, 환대와 증진과 보호와 통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고, “올바로 이해된 공동선을 해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새로운 공동체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²⁷⁾ 지도자들은 자신의 공동체에 대하여 명확한 책임을 지니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법적 권리들과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탑을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 놓고 계산을 잘못하여 완성하지 못한 경솔한 건축가처럼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²⁸⁾

2. 왜 그렇게 많은 난민과 이민이 있을까요?

베들레헴에서 천사들이 평화를 선포한 지 2천년을 기념하는 대희년에,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지난 20세기의 특징인 “끝없이 이어지는 끔찍한 전쟁과 분쟁, 대량 학살과 인종 청소”²⁹⁾의 결과의 하나로서 이재민의 증가를 지적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의 새로운 세기는 어떠한 참된 돌파구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무장 투쟁을 비롯하여 다른 형태의 조직적 폭력들이 국경 안팎에서 민족 이동을 계속 촉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주로 “더 나은 삶을 간절히 바라고, 흔히 기약 없는 미래에 대한 ‘절망’에서 벗어나 떠나고자”³⁰⁾ 이주를 합니다. 그들은 가족과 결합하려고 또는 직업이나 교육의 기회를 찾아 떠납니다.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제가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지적하였듯이, “자연 훼손으로 악화된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이주가 증가”³¹⁾하는 비극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7) 요한 23세,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06항.

28) 루카 14,28-30 참조.

29) 2000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3항.

30) 베네딕토 16세, 2013년 세계 이민의 날 담화.

31)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25항.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규적 통로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안전도 기회도 제공하지 않고 모든 합법적 통로는 비현실적이고 가로막혀 있으며 너무 느린 것으로 보일 때에, 주로 절박한 심정으로 다른 방도를 선택합니다.

그들이 향하는 많은 목적지 국가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거나 새 입국자들을 받아들이는 비용이 크다고 역설하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모든 이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인간 품위를 깎아내리는 과장된 외침이 확산되었습니다. 아마도 정치적 이유들 때문에 평화를 조성하는 대신에 이주민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폭력과 인종 차별과 외국인 혐오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안전을 염려하는 이들에게 크나큰 근심거리입니다.³²⁾

국제 사회의 모든 지표들에 따르면, 전 세계적 이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위협으로 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평화를 건설하는 기회로서 확신을 갖고 보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관상하는 시선으로

믿음의 지혜는 관상하는 시선을 증진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하도록 이끕니다. “이민이든 그들을 환영하는 현지인이든 모두 한 가족이고, 교회의 사회 교리가 가르치듯 모두 똑같이 보편적 목적을 지닌 지상의 재화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대와 나눔의 바탕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³³⁾ 이러한 말들은 새 예루살렘에 관한 성경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사야 예언서(60장)와 묵시록(21장)은 모든 민족들에게 성문이 언제나 열려 있는 도시를 묘사합니다. 사람들은 그 도시를 보고 놀라워하며 보화들로 가득 채웁니다. 그 도시를 이끄는 군왕은 평화이며,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다스리는 원칙은 정의입니다.

32) 유럽 주교회의들의 이주사목 책임자들에게 한 연설, 2017.9.22. 참조.

33) 베네딕토 16세, 2011년 세계 이민의 날 담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을 이 관상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집 안과 거리와 광장에 살고 계시는 하느님을 볼 줄 아는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 하느님께서서는 연대와 형제애를 증진해 주시고 선과 진리와 정의를 향한 열망을 복돋워 주십니다.”³⁴⁾ 달리 말하자면, 평화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한 시선으로 이민과 난민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이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용기와 재능과 에너지와 열망, 그리고 고유 문화라는 보화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을 받아들여 준 나라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는 또한, 심지어 자원이 부족한 곳에서조차, 이민과 난민에게 마음과 문을 여는 무수한 개인, 가정, 공동체의 창의력, 끈기 그리고 희생정신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관상하는 시선이 공공의 선익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식별을 이끌고, 인류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것들과 각 사람의 행복을 염두에 두면서 “올바로 이해된 공동선을 해치지 않는 한계 내에서”³⁵⁾ 환대의 정책을 추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미 싹트고 있는 평화의 씨앗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것들이 잘 자라도록 돌보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이민과 난민에 관한 갈등으로 분열되고 양극화되어 있는 우리 도시들은 평화를 위한 워크숍 장소로 변할 것입니다.

4. 행동을 위한 네 가지 이정표

비호 신청자, 난민, 이민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그들이 갈구하는 평화를 찾을 기회를 제공하려면 네 가지 행동, 곧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그리고 통합하기를 결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³⁶⁾

34)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71항.

35) 「지상의 평화」, 106항.

“환대하기”는 이민들과 실향민들이 목표한 국가에 합법적으로 들어가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그들을 더 이상 박해와 폭력의 나라로 몰아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국가 안보에 관한 염려와 기본적 인권에 관한 배려 사이의 균형을 맞추도록 요구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손님 접대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까.”³⁷⁾

“보호하기”는 피신처와 안전을 찾아 실질적 위험들에서 달아난 사람들의 침범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착취당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심지어 노예살이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과 학대의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방인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³⁸⁾

“증진하기”는 이민과 난민의 온전한 인간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수많은 가능한 수단 가운데, 저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모든 단계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잠재력을 가꾸고 실현할 수 있게 해 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거부와 대립보다는 대화의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더욱 잘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하느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이방인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³⁹⁾

끝으로 “통합하기”는 난민과 이민이, 지역 공동체의 온전한 인간 발전에 봉사하는 가운데 상호 풍요로움과 유익한 협력 과정의 일부로서, 자신들을 환대하는 사회의 생활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로 성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

36) 2018년 세계 이민의 날 담화.

37) 히브 13,2.

38) 시편 146,9.

39) 신명 10,18-19.

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⁴⁰⁾

5. 두 가지 글로벌 콤팩트를 위한 제안

저는 이러한 정신이, 2018년에 유엔이 두 개의 글로벌 콤팩트, 곧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상적인 이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와 난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의 초안들을 작성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선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세계 차원의 합의인 이 콤팩트들은 정책 제안과 실천 수단을 위한 주요 골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글로벌 콤팩트는 연민과 선견지명과 용기로서 영감을 받아, 평화 건설 과정에 도움이 되는 온갖 기회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국제 정치에서 요구되는 현실주의가, 냉소주의와 무관심의 세계화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화와 조정은 국제 공동체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특수한 의무입니다. 만일 국제적 협력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기금이 보장된다면, 덜 부유한 나라들에서도 더 많은 수의 난민이 국경을 넘어서 환대를 받거나, 또는 더욱더 환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이주사목국이, 공공 정책과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태도와 실천에서 이 네 가지 동사를 이행하도록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20가지 행동 지침들을 발표하였습니다.⁴¹⁾ 이것을 비롯하여 여러 다른 기회에 발표하는 내용들은 두 가지 유엔 글로벌 콤팩트의 채택 과정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관심은, 교회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고 현재까지 교회의 수많은 활동에서 계속되어 온 매우 일반적인 사목적 관심의 표지입니다.

40) 예페 2,19.

41) 「난민과 이민을 위한 20가지 행동 지침」(*Responding to Refugees and Migrants: Twenty Action Points*), 「난민과 이민을 위한 20가지 사목 행동 지침」(*Responding to Refugees and Migrants: Twenty Pastoral Action Points*). Document UN A/72/528도 참조.

6. 공동의 집을 위하여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도록 합시다.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꿈’을 여럿이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이민들과 난민들의 공헌을 평가할 줄 안다면 인류는 모든 이의 가정이 되고 우리들의 이 지구는 참으로 ‘공동의 집’이 될 것입니다.”⁴²⁾ 전 역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이 “꿈”을 믿었고, 그들이 이룬 성취는 그것이 단지 유토피아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분들 가운데, 올해로 선종 100년을 맞은 프란치스카 하비에르 카브리니 성녀를 기억합니다. 오늘 11월 13일에 수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성녀를 기념합니다. 이 탁월한 여성은 이민들을 섬기는 데 생애를 봉헌하였고 그들의 주보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녀는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환대하고 보호하며 증진하고 통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녀의 전구로써,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음 말씀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⁴³⁾

바티칸에서

2017년 11월 13일

이민의 주보성인, 프란치스카 하비에르 카브리니 성녀 기념일

프란치스코

<원문 Message of His Holiness Pope Francis for the Celebration of the 51st World Day of Peace, *Migrants and Refugees: Men and Women in Search of Peace*, 2017.11.13., 이탈리아어도 참조>

42) 2004년 세계 이민의 날 담화, 6항.

43) 야고 3,18.

제104차 세계 이민의 날 담화

“이민과 난민을 환대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하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이민의 날 담화문은 교황님의 이민의 날 담화에 담긴 내용을 충실히 전하며 우리의 현실도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을 너희 본토인 가운데 한 사람처럼 여겨야 한다. 그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레위 19,34). 교황님께서서는 재임 초기에 전쟁과 박해, 자연재해와 빈곤을 피해 달아난 수많은 이민과 난민의 비참한 상황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또한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를 설립하시고 교황님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이민, 강제 이주민,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이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출발과 여정과 도착, 그리고 귀환에 이르기까지 이주로 체험하는 모든 단계에서 공동체는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통합하기”의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가톨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민과 난민에 대해 너그럽고 신속하며, 지혜롭고 통찰력 있게 응답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먼저 **환대하기**는 무엇보다 이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목표한 국가에 들어가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하여 인도주의 비자와 가족 재결합 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에 구체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환대는 **인간 중심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이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사회 구조가 필요하며 이주민에 대한 환대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식 성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주 사목을 하는 이주민 사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거리에서 이주민 친구들을 만나면 피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인사해 주세요!” 사실, 우리들의 따뜻한 미소와 인사만으로도 머나먼 땅을 찾아온 이주민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보호하기는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이민과 난민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지켜 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사관의 적절한 지원, 언제라도 신분증을 직접 소지할 권리, 공정한 사법 접근권, 개인 은행 계좌 개설 가능성, 최저 생계비 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국제 아동 권리 협약은 미성년 이민의 보호를 위한 보편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미성년 이민은 이민자 신분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억류에서도 제외되어야 하고, 초중등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년이 되었을 때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와 가능성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적을 가질 보편적 권리가 인정되어 모든 아동이 출생 때 마땅히 국적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5만 명의 이주 아동이 거주하고 있고 체류 자격의 증명 없이도 초, 중, 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학 허용 여부가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제로 입학이 거부된다 하더라도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내부 지침을 통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 아동은 고등학교 과정 수료 시까지 강제 출국을 유예하고 있지만, 1년에 100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 강제 퇴거 명령을 받거나 구금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여 자랐거나 장기간 성장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만을 갖고 있는 아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난민 미등록 이주자 자녀의 경우 출생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해 국적을 가질 권리와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 등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하여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특별체류자 자격 부여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외국인 비자 제도에는 여성 성폭력, 가정 폭력,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안정적 체류 방안이 부재합니다. 미등록 체류 이주 여성이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추방의 두려움으로 폭력 피해 신고를 꺼리게 됩니다. 이주 여성 노동자의 숙소로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사생활이 보호되는 공간이 제공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이주 여성 노동자 고용사업장에서는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 감독을 하며, 성폭력 피해를 신고할 경우 사업장 변경 조치를 시행하고, 성폭력, 가정 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체류 자격을 보장하며 출국 조치 전에 충분히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 기관을 이용할 때에도, 내국인 여성과 이주 여성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데, 한국인과 혼인하지 않은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 체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증진하기는 자신을 환대하는 공동체와 더불어 인간으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권리를 부여받았음을 보장하려는 확고한 노력입니다. “노동은 자연적으로 사람들의 일치를 지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과 난민을 사회적 직업적으로 포용하고, 모든 이에게 고용, 언어 교육, 시민권, 그리고 모국어로 충분한 정보 제공을 보장하려는 확고한 노력을 교황님께서서는 격려하십니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는 특성상 지리적으로 외부와 고립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장시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내국인과 비교하여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휴게 시간과 유급 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업장 이탈 비율이 높아 농장주는 노동자의 이탈을 막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분증을 압류하는 등의 수단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동사 **통합하기**는, 이민과 난민의 존재로 생겨나는 문화 간 상호 필요성을 위한 기회에 관한 것입니다. 통합은 “이민들에게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억누르거나 잊도록 만드는 동화(同化)”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그들에 대해서 ‘몰랐던 점’들을 발견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참된 가치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서로를 잘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통합의 과정은 재정적 또는 언어적 요건 없이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또한

도착국에서 장기 거주를 원하는 이민에게 특별히 합법화의 가능성을 열어 줌으로써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주 여성 지원 체계는 여성 인권의 관점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입장을 우선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족 정책의 일환으로 이주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통합적 관점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정상 회담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국제적 차원의 책임을 공유하여, 이민과 난민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민과 난민을 지원하는 행동을 결행하려는 바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국은 2018년 말 이전까지 두 가지, 곧 난민과 이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국제 협약)의 초안을 작성하고 승인하는 과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각 교구 이주민 사목 단체들은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의 이주사목국에서 마련된 난민과 이민을 위한 20가지 사목 행동 지침과 행동 지침을 꼭 읽어 보시고 실행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 세상 모든 이민과 난민의 희망과, 또 이들을 환대하는 공동체들의 열망을 성모님의 전구에 맡겨 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응답하여 다른 이들과 이방인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전 세계적인 관심과 연대의 의미로 교황님의 담화문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이번 담화문을 준비하였습니다.

2018년 4월 29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정 신 철 주교

제8회 ‘사회교리주간’을 맞이하며 (제37회 인권주일)

한국사회와 사회교리⁴⁴⁾ 원리

인간 존엄성의 원리는 사회교리의 다른 모든 원리와 내용을 이루는 바탕이다. 사회교리는 사회생활에서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원리들로서 공동선, 연대성, 보조성의 원리들을 제시한다.(「간추린 사회교리」 160항 참조)

인간 존엄성(Human Dignity)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사도 10,34; 로마 2,11; 갈라 2,6; 에페 6,9 참조). 모든 사람은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니만큼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앞에 지닌 존엄성은 인간이 다른 사람 앞에서 갖는 존엄성의 기초가 된다(「간추린 사회교리」 144항,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은 지나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요구한다. 인간 존엄성은 부당한 불평등의 퇴치를 촉구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947항).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각 교구, 본당, 수도회와 가정에 난민을 한 가족씩 받도록 요청한 바 있다. 2018년 제주도에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자 제주교구는 이주사목센터를 통해 지원에 나섰다.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을 너희 본토인 가운데 한 사람처럼 여겨야 한다. 그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레위 19,34). 전쟁과 빈곤으로부터 달아난 사람의 생

44) 사회교리는 사회생활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사회교리’는 교회가 공의회와 교황님의 회칙 등을 통해 시대의 표징을 해석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교회와 신자들이 어떻게 식별,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 원리와 지침을 가르친 내용입니다.

명을 구하는 일은 인간다운 행위입니다(교황 프란치스코, 세계 난민의 날 트윗 메시지, 2018.6.20.).

공동선(Common Good),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사회를 향한 원리

공동선이란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로 이해해야 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906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공동선을 이루고 증진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국가는 공동선의 요구 즉 “평화에 대한 노력, 국가 권력 기구, 건전한 사법 체계, 환경 보호, 모든 이에 대한 기본적인 편의 제공과 같은 것이며, 그 가운데 일부는 음식, 주거, 노동, 교육, 문화와 교통, 기본적인 의료 혜택,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종교 자유의 수호와 같은 인간의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이 있다(「간추린 사회교리」 166항).

재화의 보편적 목적 : 창조된 모든 재물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비록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 사유 재산을 존중하고 사유 재산권과 그 재산권의 행사를 존중해야 하더라도, 재물의 보편적 목적이 무엇보다 우선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402-2403항). 정치권력은 공동선을 이룰 수 있도록 소유권의 정당한 행사를 규제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406항).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 : 재화의 보편 목적의 원칙은 가난한 이들, 소외받는 이들, 어느 모로든 자신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생활 조건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간추린 사회교리, 182항). 애덕의 실천은 자선 행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빈곤 문제의 사회적 정치적 차원들에 대처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간추린 사회교리」 184항).

우리나라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건물)이 투기(불로소득,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소득보다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과 임대료 규제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시민이 주거 고통을 안고 있다. 경제적 이윤을 앞세운 무분별한 도시 개발로 인한 강제 퇴거로 주거권과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보조성(Subsidiarity), 도와 주되 간섭하지 말라

보조성의 원리에 따르면, “상위층의 사회는 하위층 사회의 내적 사안에 간섭하여 그 고유의 임무를 제거하면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선을 목표로 그 행동이 하위층 사회의 행동과 조화되도록 지원하고 도와 주어야 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883항).

참여 : 보조성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참여이다. 참여는 모든 사람이 책임을 가지고 공동선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다. 이러한 참여는 사회생활의 특정 영역에만 제한되거나 국한될 수 없다. 모든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여야 한다. 정보는 민주적 참여를 위한 주요한 도구이다(「간추린 사회교리」 188항, 414항).

독일의 공익·정치 재단인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은 매년 인권 증진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상을 주는데, 한국의 ‘촛불 시민’을 ‘2017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⁴⁵⁾

연대성(Solidarity), 우리는 모두 서로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연대성은 가깝든 멀든 수많은 사람들의 불행을 보고서 막연한 동정심 내지 피상적인 근심을 느끼는 무엇이 아니다.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도 항구적인 결의이다(「간추린 사회교리」 193항). 연대성의 원리는,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자신이 속한 사회에 빛을 지고 있다는 인식을 기를 것을 요구한다(간추린 사회교리, 195항). 사회-경제적 문제들은 모든 형태의 도움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941항).

2018년 7월 11일, 전국 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수도권단체

45) 귀하는 대한민국의 평화적 집회와 장기간 지속된 비폭력 시위에 참여하고, 권위주의에 대항하며 신생 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집회의 자유 행사를 통한 모범적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 상을 수여합니다.(‘대한민국 촛불시민’이 받은 에버트 재단 인권상 상장, 2017.12.5. 베를린)

는 '쌍용자동차 대량해고로 일어난 서른 번째 죽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개입을 호소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부터 (매주 월) 분향소가 차려진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해고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추모하고 쌍용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미사'가 봉헌되었다. 9월 14일 쌍용차 노조와 사측은 2019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모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려는 교회는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향해 언제나 첫발을 내딛고,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지지하며,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즐거워합니다(「복음의 기쁨」 24항, 교황 프란치스코의 사도 권고).

■ 부록5

제126차 사회교리학교 기본과정 수강생 모집

- ☑ 기 간 : 2019.2.11.-5.13 (매주 월, 총 13주간), 19:00~21:00
- ☑ 교육장소 :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 ☑ 수 강 료 : 50,000원(참고교재 「가톨릭 사회교리 주제편, 문헌편」 제공)
우리은행 454-009601-13-001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리학교
- ☑ 접 수 : 90명 (선착순)
- ☑ 문 의 : 정의평화위원회 02)727-2431, 773-1050 / FAX : 02)773-1051
- ☑ 교육 일정표

일 자	내 용	강 사
2월 11일	가톨릭 사회교리 (사회교리 원리들과 사회생활의 근본 가치들)	박동호 신부 (이문동성당)
2월 18일	새로운 사태 (교황 레오 13세 회칙) 백주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최부식 신부 (동대문시장성당)
2월 25일	지상의 평화 (교황 요한 23세 회칙)	심현주 박사 (그리스도교 사회윤리)
3월 4일	사목헌장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김형진 신부 (사목국 일반교육부)
3월 11일	민족들의 발전 (교황 바오로 6세 회칙)	심현주 박사 (그리스도교 사회윤리)
3월 18일	복음의 기쁨 (교황 프란치스코 사도권고)	박동호 신부 (이문동성당)
3월 25일	찬미받으소서 (교황 프란치스코 회칙) 환경·생태계	백중연 신부 (환경사목위원회)
4월 1일	인간과 인권	김 냉 교수 (서강대)
4월 8일	인간 노동	이주형 신부 (노동사목위원회)
4월 15일	문화와 교육	최준규 신부 (가톨릭대학교)
4월 22일	정치 공동체	김형진 신부 (사목국 일반교육부)
4월 29일	세계공동체, 평화	양운기 수사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5월 13일	교회와 세상	나승구 신부 (빈민사목위원회)

* 강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8회 사회교리주간(12.9.-15) 기념 세미나

제37회 인권주일

일시: 2018.12.9.(일) 14:00-17:00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을 너희
본토인 가운데 한 사람처럼 여겨야 한다.
그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레위기 19, 34)

- 기초강연: 난민 사태로 바라본 배척과 환대
삼유환 신부(예수회 난민 봉사기구(Jesuit Refugee Service) 한국대표)
- 발 제 1: 우리사회의 배타와 혐오: 왜 이방인을 혐오하는가?
홍상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 발 제 2: 서울교구 이주사목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남창현 신부(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 발 제 3: 이주노동자(이민자)에 대한 배척과 환대
김정연 교수(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발 제 4: 이방인 환대와 사목적 접근: 본당 사례를 중심으로
임문철 신부(제주교구 동문성당)
난민 당사자 사례 발표
- 기념미사 (17:00-18:00)

이민과 난민: 평화와 혐오를 찾는 시금석들

극복해야 할 배타와 혐오

- 주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
- 주관: 천주교서울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 이주사목위원회

제 8 회 사회교리주간 기념 세미나 미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